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제1장 개 요

1. 세입·세출 결산	1
가. 세입 결산	1
나. 세출 결산	2
2. 재무제표	5
가. 재정상태표	5
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7
다. 순자산변동표	9
라. 현금흐름표	10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1. 전용 및 세목조정 시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부적절한 집행 개선 필요	11
가. 개요	11
나. 전용 및 세목조정의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개선 필요	16

II. 세입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 교육실적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경비수입 제고 필요	21
---	----

III. 세출

1. 감사원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서류제출 등 업무처리 방식 시정 필요 24
2. 기본경비(1111-25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27
3. 감사활동경비(1131-303):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제도 개선 필요 · 34
4.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공사 수요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등 39
 - 가.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 공사 수요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40
 - 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사업 변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ESS 통합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43
5.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및 임의적인 이월 지양 필요 등 47
6.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1142-651): 동일 목적 계약의 임의적 분할 개선 필요 .. 55
7. 감사연구활동경비(1151-351): 연구용역비의 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선정 필요 등 61
 - 가. 연구용역비의 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선정 필요 62
 -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 점검 및 시정 필요 65
 - 다. 감사연구원 공동 학술대회의 경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69

※ 참고자료

1.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3
2.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0
3.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2
4. 2021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5
5.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7

제1장 개 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천원)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770,000	995,415	995,085	129.2%	99.9%	0	330

* 위약금 부과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2025. 12. 31. 기준 미수납

□ 2025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9억 9,50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억 7,000만원 대비 129.2%이며, 징수결정액 9억 9,542만원 대비 99.9%임.

○ 감사교육원의 교육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1,162만원 증가하고, 지방관사 임차보증금 및 명예퇴직수당 반납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1억 9,935만원 증가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함.

나.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추경 포함)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용 등* 증감(△)액				
146,934	2,659	0	547 △547	149,593	141,196 (94.4%)	3,750 (2.5%)	4,647 (3.1%)

* 전용 등: 전용 및 세목조정의 합계 금액

□ 예산액 1,469억 3,4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6억 5,862만원,
예산현액은 1,495억 9,262만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4%인 1,411억 9,572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37억 4,988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인 46억 4,702만원임.

○ 지출액 1,411억 9,572만원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1,018억 1,212만원(72.1%)
물건비로	335억 7,717만원(23.8%)
이전지출로	11억 6,402만원(0.8%)
자산취득으로	46억 4,241만원(3.3%)이

각각 지출되었는바, 인건비와 물건비가 1,353억 8,929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5.9%를 차지함.

○ 이월액은 37억 4,988만원으로,

- 「차세대 OASYS 구축사업 연구용역」 14억 9,713만원 등 계약
기간 미도래로 물건비 19억 8,1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 「차세대 OASYS 구축사업」 7억 9,530만원 등 계약기간 미도래
로 자산취득 17억 6,284만원이 이월됨.

○ 불용액은 46억 4,702만원으로,

- 정·현원 차이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6억 1,535만원이,
-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물건비 등 22억 6,665
만원, 자산취득비 17억 2,826만원 등 40억 3,167만원이 불용됨.

○ 전용액 3억 8,986만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 (세부사업)감사기구역량강화의 (세목)일반용역비 8,800만원을
(세부사업)감사기구역량강화의 (세목)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함.

- 전산 서버실 상시 가동 등 전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 부족으로

- (세부사업)감사활동경비의 (세목)일반수용비 8,500만원과 (세목)
일반연구비 1억원을 (세부사업)기본경비의 (세목)공공요금및제
세로 전용함.

- 감사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참석자 증가 등 사업
규모 확대로

- (세부사업)국제교류협력강화의 (세목)일반용역비 4,000만원을
(세부사업)감사연구활동경비의 (세목)일반용역비로 전용함.

2.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2025년도 재정상태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C)	244,852,403	241,102,209	3,750,194	1.6 %
부 채(D)	1,823,748	1,620,493	203,255	12.5 %
순자산(C-D)	243,028,655	239,481,716	3,546,939	1.5 %

○ 2025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은 2,448억 5,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5,019만원(1.6%) 증가하고, 부채총액은 18억 2,3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25만원(12.5%) 증가함.

○ 각 계정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금융자산은 계약만료 등으로 지방관사 임차보증금이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 감소하였고 징계부과금 수납으로 미수채권은 300만원 감소함.
- 일반유형자산은 건축물,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취득 및 건물,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6,289만원 감소함.

- 무형자산은 차세대 OASYS 시스템구축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으로 전년 대비 68억 4,137만원 증가함.
- 기타자산은 차세대 OASYS 구축사업의 무형자산 대체 등으로 선급금이 12억 6,388만원 감소하였고, 보험료 등 선급비용이 327만원 증가함.
- 부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 90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억 314만원 증가함.

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2025년도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152,977,944	150,998,534	1,979,410	1.3 %
II. 관리운영비	0	0	0	-
III. 비배분비용	0	0	0	-
IV. 비배분수익	489,858	142,493	347,365	243.8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52,488,086	150,856,041	1,632,045	1.1 %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52,488,086	150,856,041	1,632,045	1.1 %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순원가¹⁾는 1,524억 8,8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204만원(1.1%) 증가함.

-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순원가(총원가-수익)는 전년 대비 19억 7,941만원 증가한 1,529억 7,794만원으로

1) 재정운영 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비용 - 수익) + 비배분원가(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총원가는 인건비 53억 8,937만원이 증가하였고, 지급임차료는 2억 9,487만원, 여비교통비 13억 539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보다 17억 4,690만원 증가한 1,533억 1,208만원이며
- 총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251만원 감소한 3억 3,414만원임.
- 비배분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배분수익은 사용료수익 등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이 전년 대비 2억 5,337만원 증가하였고, 지출금반납금 등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9,399만원 증가함.

다. 순자산변동표

〈2025년도 순자산변동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239,481,716	231,712,055	7,769,661	3.4 %
II. 재정운영결과	152,488,086	150,856,041	1,632,045	1.1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56,028,320	160,362,945	-4,334,625	-2.7 %
IV. 조정항목	6,704	-1,737,242	1,743,946	100.4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43,028,654	239,481,717	3,546,937	1.5 %

○ 2025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2,430억 2,8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4,694만원(1.5%) 증가함.

- 이는 기초순자산총액 2,394억 8,172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 1,524억 8,809만원을 차감하고,
-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411억 9,572만원, 공무원연금 등 국가 부담액 158억 7,414만원 등 1,570억 7,316만원을 조달하고, 국고 이전지출(세입결산액) 등 10억 4,484만원을 이전한 1,560억 2,832만원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가산하며,
- 조정항목으로 자산재평가손실 및 기타순자산 증감 등에 따른 670만원을 가산한 결과임.

라. 현금흐름표

〈2025년도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22,643	0	1,922,643	순증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22,643	0	-1,922,643	순감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
IV. 현금의증감(I+II+III)	0	0	0	-
V. 기초의현금	0	0	0	-
VI. 기말의현금(IV+V)	0	0	0	-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9억 2,264만원이 유입함.

- 현금유입은 1,420억 2,58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고수입 1,411억 9,572만원이고, 현금유출은 1,401억 316만원으로 주로 인건비 지급액 1,032억 495만원이 반영된 것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9억 2,264만원이 유출함.

- 현금유입은 기타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1억 6,500만원이고, 현금유출은 일반유형자산 취득 10억 6,918만원, 무형자산 취득 10억 1,846만원 등 20억 8,764만원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음.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1. 전용 및 세목조정 시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부적절한 집행 개선 필요

가. 개요

□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소관별·사업별·대상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²⁾

○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업 간 또는 예산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고,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내역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의 변경, 세목조정은 같은 목 내에서 세목 간의 변경을 의미함.

2)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p. 261~266

-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국가재정법」에 근거(이용은 제47조, 전용은 제46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일정한 위임범위 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비교>

기능별 성질별 (목-세목)		프로그램(항) X		프로그램 Y
		단위사업(세항) A		단위사업 B
		세부사업(세세항)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전용 (동일 프로그램, 단위사업 간)	이용 (프로그램, 이상 사이)
	실시 설계비 (420-02)	내역변경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전용 (목 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430-01)	세목조정 (동일 목, 세목 간)		
	저장품 매입비 (430-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 263

- 최근 3개년 감사원의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7억 5,400만원, 2024년 12억 200만원, 2025년 5억 4,700만원으로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이용(A)	전용(B)	세목조정(C)	내역변경(D)	계(A+B+C+D)
2023회계연도	-	1,246	508	-	1,754
2024회계연도	-	959	203	40	1,202
2025회계연도	-	390	157	-	547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2025년에 이루어진 전용 3억 9,000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5년도 전용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3.11.	자체 전용	감사기구 역량강화 (ODA) (1135-323)	국외업무 여비 (220-02)	88,000	감사기구 역량강화 (ODA) (1135-323)	일반 용역비 (210-14)	88,000	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숙박비 등 을 직접 집행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4.7.	승인 전용	기본경비 (1111-251)	배상금 (310-02)	1,750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 수용비 (210-01)	1,750	정보공개거부처 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7.8.	자체 전용	감사연구 활동경비 (1151-351)	일반 용역비 (210-14)	40,000	국제 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 용역비 (210-14)	40,000	감사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 제세미나 참석자 증가 등 사업 규 모 확대
9.18.	자체 전용	기본경비 (1111-251)	국외교육 여비 (220-03)	17,000	국제 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업무 여비 (220-02)	17,000	장기위탁교육과 정 관련 국외연 수 수행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부 족
11.25.	자체 전용	기본경비 (1111-251)	일용 임금 (110-04)	34,000	인건비 (1101-151)	보수 (110-01)	34,000	무기계약직(환경 관리원) 업무범 위 증가 및 예측 불가한 퇴사 등 에 따른 대체인 력에 대한 일용 임금 부족
12.19.	자체 전용	기본경비 (1111-251)	공공 요금및 제세 (210-02)	185,000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 수용비 (210-01)	85,000	감사원 본원 서 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료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일반 연구비 (260-01)	100,000	
12.19.	승인 전용	기본경비 (1111-251)	배상금 (310-02)	17,110	기본경비 (1111-251)	일반 수용비 (210-01)	17,110	소송 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상 대방(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 송비용 지급
12.29.	승인 전용	국제 교류협력 강화 (1135-322)	국제 부담금 (340-02)	7,000	국제 교류협력 강화 (1135-322)	국외업무 여비 (220-02)	7,000	환율 급등에 따 른 INTOSAI 회 비 예산부족

자료: 감사원

□ 2025년에 이루어진 세목조정 1억 5,700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5년도 세목조정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세목조정 증액			세목조정 감액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1.23.	기본경비 (1111-251)	일반 용역비 (210-14)	1,991	기본경비 (1111-251)	일반 수용비 (210-01)	1,991	고감단·과장급 직위 후보자 역량 평가 대상인원 증 가로 규모 확대
4.25.	감사교육원 수 입대체경비 (1142-651)	일용임금 (110-04)	1,914	감사교육원 수 입대체경비 (1142-651)	상용임금 (110-03)	1,914	구내식당 조리원 퇴사에 따른 일시 적 일용직 고용을 위한 일용임금 부 족
6. 9.	기본경비 (1111-251)	일용임금 (110-04)	60,000	기본경비 (1111-251)	상용임금 (110-03)	60,000	제1별관 재건축 준공에 따른 관리 인력 정규직 확보 전 일용직 보수 지급
10.29.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50,000	기본경비 (1111-251)	임차료 (210-07)	37,000	감사원 본원 서버 실 상시 가동 등 에 따른 전기 수 요 증가 등 공공 요금 예산 부족
					복리후생비 (210-12)	13,000	
11.27.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5,000	기본경비 (1111-251)	임차료 (210-07)	15,000	본원 수도료 등 예산 부족
12.23.	국제 교류협력 강화 (1135-322)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800	국제 교류협력 강화 (1135-322)	임차료 (210-07)	1,300	환율 급등으로 네 덜란드대사관 주 재관 보험료 등 예산 부족
		시설장비유 지비 (210-09)	500				

(단위 : 천원)

일자	세목조정 증액			세목조정 감액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12.31.	기본경비 (1111-251)	일반 수용비 (210-01)	27,000	기본경비 (1111-251)	피복비 (210-03)	2,300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사 물품 수요 증가 등
					급식비 (210-04)	3,000	
					일·숙직비 (210-06)	1,200	
					임차료 (210-07)	11,000	
					복리 후생비 (210-12)	9,500	

자료: 감사원

나. 전용 및 세목조정의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개선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도 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45조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⁴⁾ 이는 연도 말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적인 전용이나 긴급하지 아니한 경비의 형식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함임.

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37)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 그러나 감사원의 2023~2025회계연도 분기별 이·전용 등⁵⁾ 금액 현황 중 4분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38.8%에서 2024회계연도 58.0%, 2025회계연도 61.5%로, 2025년 비율이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2025년 12월에만 2억 3,741만원이 전용 및 세목조정 되었는데, 이는 2025년 전체 이·전용 등 금액 중 43.4%에 해당하고, 최근 3년간 12월에 이루어진 비율과 비교할 때 가장 큼.

<2023~2025회계연도 분기별 이·전용 등 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2월	
2023회계연도	138.5 (7.9)	345.6 (19.7)	590.1 (33.6)	680 (38.8) 72.9 (4.2)	1,754.2 (100.0)
2024회계연도	—	170 (14.2)	334 (27.8)	698 (58.0) 191 (15.9)	1,202 (100.0)
2025회계연도	90 (16.4)	64 (11.6)	57 (10.4)	336 (61.5) 237 (43.4)	547 (100.0)

자료: 감사원

5) 이용, 전용, 세목조정, 내역변경을 모두 포함하여 ‘이·전용 등’ 이라 함.

- 게다가 4분기 이·전용 등 횡수는 2023년 총 30회 중 16회, 2024년 총 22회 중 13회, 2025년 총 15회 중 8회로서, 연간 이·전용 등 총횡수의 과반이 4분기에 집중되고 있음.

<2023~2025회계연도 분기별 이·전용 등 횡수>

(단위: 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023회계연도	3	6	5	16	30
2024회계연도	-	3	6	13	22
2025회계연도	2	3	2	8	15

자료: 감사원

- 이처럼 4분기에 이·전용 등이 집중되는 현상은 예산 소진이 현실화 되는 연말에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던 측면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 중 2025년에 4분기 이·전용 등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이·전용 등 금액의 43.4%가 12월에 집중된 것은, 연도 말 집행잔액을 기존의 집행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조정이 예년에 비해 2025년에 다소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일례로, ‘기본경비’ 사업에서 2025년 12월 31일 피복비, 급식비, 일·숙직비, 임차료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 합계 2,7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는데,⁶⁾ 감사원은 그 사유로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사 물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다수 세목에서 발생한 소액의 잔금을 일괄적으로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논란이 없는지 및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집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2월 31일 기본경비 사업 내 세목조정 현황>

(단위: 천원)

일자	세목조정 증액			세목조정 감액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12. 31.	기본경비 (1111-251)	일반 수용비 (210-01)	27,000	기본경비 (1111-251)	피복비 (210-03)	2,300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 사 물품 수요 증가 등
					급식비 (210-04)	3,000	
					일· 숙직비 (210-06)	1,200	
					임차료 (210-07)	11,000	
					복리 후생비 (210-12)	9,500	

자료: 감사원

- 6) ‘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2025년 1월 23일 일반용역비로 199만 1,000원이 세목 조정(감액)되고, 12월 19일 배상금으로 1,711만원이 전용(감액)되는 등 연중 다른 세목의 재원으로 활용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타 비목의 집행잔액으로부터 2,700만원을 보충한 것은 일반수용비 소요에 대한 사전 예측과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미흡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5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전용 등은 예년에 비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일부 사례는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지양하는 연도 말 집행잔액의 형식적 활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소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이·전용 등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Ⅱ. 세 입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 교육실적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경비수입 제고 필요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 단체 자체감사 및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납부 받은 교육훈련 수수료와 생활관 사용료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6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대비 93.2%인 5억 7,6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618	618	-	618	576.1	576.1	-	-	636

자료: 감사원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징수기준에 따라 교육 실시 후 교육비 및 교육시설 임대료를 수시 수납하는 방식으로 관리됨.⁷⁾⁸⁾

7)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 동 세목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례적으로 예산액에 비하여 수납액이 적었고, 2025년에는 계획 대비 4,19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2022~2025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차이 (A-C)
	본예산	추경(A)							
2022	520.0	520.0		520.0	425.4	425.4	81.8	100.0	94.6
2023	489.0	489.0	-	489.0	446.1	446.1	91.2	100.0	42.9
2024	600.0	600.0	-	600.0	564.5	564.5	94.1	100.0	35.5
2025	618.0	618.0	-	618.0	576.1	576.1	93.2	100.0	41.9

자료: 감사원

- 이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하였던 교육 계획보다 실제 교육인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고, 2025년에는 5,200명의 교육인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인원은 계획 대비 80%인 4,159명만 이수하였음.

-
-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 삭제
 5. 삭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교육훈련수수료(40,000원/1일), 생활관 사용료(20,000원/1일)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① 교육생 상당수(약 10%)가 교육 신청에 따른 수강생 선발 이후 교육을 취소하고, ② 강의장 및 생활관 등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연초에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 대비 교육 대상자 정원을 축소하여 선발한 것에 기인하였다는 입장임.⁹⁾

<2022~2025년 교육 계획 및 교육 실적>

(단위: 명, 회, %)

연도	교육 계획(A)		교육 실적(B)		성과달성률(B/A)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22	4,880	81	4,166	58	85.4	71.6
2023	4,510	77	4,249	65	94.2	84.4
2024	5,200	80	4,446	81	85.5	101.3
2025	5,200	80	4,159	82	80.0	102.5

-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교육생 수강료 수입에 기반하여 편성되는 만큼, 예산에 반영된 수입 규모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교육인원과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생 선발 이후 취소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취소율을 낮출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설공사 등 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교육 정원을 계획 대비 축소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2022년과 2023년에는 수강생의 취소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하였던 교육도 취소되면서 교육 횟수 실적도 부진하였음.

Ⅲ. 세 출

1. 감사원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서류제출 등 업무 처리 방식 시정 필요

□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관 법인의 설립허가와 감독 업무를 하고 있음. 2025년에는 ‘(사)한국감사학회’의 설립을 허가하여 소관 법인은 총 7개였음.¹⁰⁾

<감사원 소관('25년 기준) 법인 현황>

연번	비영리법인	대표자명	허가일	설립목적
1	(사)감우회	하복동	1985. 3. 15.	· 감사원 출신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감사업무 창달을 위한 연구
2	(사)한국감사협회	이욱희	2005. 2. 1.	· 국내외 내부감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 · 공인내부감사사(CIA)자격증 제도 운영
3	(사)한국부패학회	김태황	2013. 6. 25.	· 반부패정책 및 반부패법률 등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도모하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사회의 반부패와 청렴성의 증진 · 학회보 및 부패방지 관련 서적의 발행
4	(사)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장종현	2014. 12. 29.	· 공공기관 내부감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이론·실무를 연구 ·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의 발전 및 내부감사업무 질적향상 추진
5	(사)청지기윤리 교육연구원	오필환	2017. 7. 24.	· 공직자 등에 청지기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 · 감사 및 검사 대상 공공기관의 공직부패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등
6	(사)한국내부통제 연구원	문호승	2023. 12. 19.	· 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 확립과 내부통제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연구, 저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사)한국감사학회	문호승	2025. 6. 16.	· 감사 관련 학술 및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감사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에 기여 · 감사학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감사 유관기관 및 대학 등과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책무성 연구 전담기구 운영 등

자료: 감사원

10) 다만, 2026년 7월 22일에 (사)한국부패학회가 감사원 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6년 기준 감사원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한국부패학회를 제외한 6개 법인임

□ 해당 규칙 제9조11)에 따르면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은 감사원에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자산의 증감 사유, 재산목록, 사원의 이동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제출서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한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2022사업연도 관련 서류 일부가 2026년 6월에야 접수·등록되는 등의 경우를 볼 때, 감사원의 법인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감사원 소관('25년 기준) 비영리법인의 제출서류 등록 현황>

구분	(사)감우회	(사)한국 감사협회	(사)한국 부패학회	(사)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	(사)청지 기윤리교 육연구원	(사)한국 내부통제 연구원	(사)한국 감사학회
2022사업연도 관련 서류	26. 6.23.	23. 7. 7.	26. 6.22.	26. 6.22.	26. 6.2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3사업연도 관련 서류	26. 6.22.	24. 7.15.	26. 6.22.	24. 3.16.	26. 6.22.	26. 6.22.	해당사항 없음
2024사업연도 관련 서류	26. 6.22.	25. 8. 5.	미제출	25. 4.18.	26. 6.22.	26. 6.22.	해당사항 없음
2025사업연도 관련 서류	26. 6.22.	26. 7.23.	미제출	26. 3.16.	26. 6.22.	26. 6.22.	26. 3.23.

* (사)한국내부통제연구원 설립허가일 2023. 12. 19. (사)한국감사학회 설립허가일 2025. 6. 16.

** (사)한국부패학회는 2026. 7. 22.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5년에는 감사원 소관임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 재구성

11)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 감사원 규칙에서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관 법인이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은 법인의 서류제출 의무 등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경비(1111-25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감사원은 기본경비(1111-251) 내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회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및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320-09)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고용부담금은 예산현액 6억 800만원 중 6억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고용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3,464	-	-	409 △171	13,702	13,500	6	196
고용부담금 (320-09)	608	-	-	-	608	600	-	8
고용보험 등 퇴직금	449 159	-	-	-	449 159	403 197	-	8

자료: 감사원

□ 고용부담금(320-09)은 국가 등이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²⁾.

< 퇴직급여제도 개관 >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급여 수준	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과 같음	적립금 + 운용수익
중간정산 (중도인출)	법정요건 충족시 가능	불가 ※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 가능	법정요건 충족시 가능
운용책임	회사	회사	근로자
적립방식	사외적립 여부 임의	부분 사외적립 (예상급여액의 100%)	전액 사외적립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12.15.),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62. 요약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년 11월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으로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연금제도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음.

실제로 2020년도 감사원 예산 편성 당시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등 퇴직금(고용부담금)’은 퇴직일시금을 전제로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기획재정부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중앙행정기관 대상)을 전제로 하여 2020년도에는 1억 9,400만원, 2021년도에는 2억 8,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국회에서 해당 금액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 다만, 감사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종전의 방식대로 퇴직금(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입장임.

○ 감사원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운용수수료 부담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함.

○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DC형)를 도입하고 있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도입 여부		중앙행정기관	도입 여부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고용노동부	○	○	경찰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관세청	○	○
교육부	-	○	국가유산청	○	○
국가보훈부	-	○	국세청	-	○
국방부	-	○	기상청	○	○
국도교통부	-	○	농촌진흥청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대검찰청	○	-
농림축산식품부	-	○	방위사업청	○	-
문화체육관광부	○	○	병무청	○	-
법무부	-	○	산림청	-	○
보건복지부	-	○	새만금개발청	-	-
산업통상부	-	○	소방청	○	-
성평등가족부	-	○	우주항공청	-	○
외교부	-	○	재외동포청	○	-
재정경제부	○	○	조달청	○	-
중소벤처기업부	○	○	질병관리청	-	○
통일부	-	○	해양경찰청	○	-
해양수산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행정안전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국가데이터처	○	○	공정거래위원회	○	-
기획예산처	-	-	국민권익위원회	○	○
법제처	○	-	금융위원회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인사혁신처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지식재산처	○	-			

*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19부 6처 18청 6위원회)을 대상으로 함.

** 오류 검증 중인 데이터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25년 말 가입자 적립현황 자료로, 시점에 따라 기관의 실제 제도도입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작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매년 법률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근로자의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게 되므로¹³⁾, 매년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적립 또는 납입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예산 소요 예측이 용이함.

반면, 감사원과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매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예산 소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소요 예산을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정당국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액과 실집행액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근로자 퇴직금 예산 요구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명)

연도	기재부 요구액	예산액	집행액	예상 퇴직 인원	실제 퇴직 인원
2021년	287,950	좌동	94,573	※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전제로 예산 반영	10
2022년	102,779	좌동	193,583	5	19
2023년	108,322	좌동	156,348	7	12
2024년	127,803	좌동	292,924	14	14
2025년	159,685	좌동	196,641	15	14
2026년	229,868	163,094	42,560 (5월 말 기준)	17	4 (5월 말 기준)
2027년	238,878	-	-	17	

자료: 감사원

특히, 2024년도의 경우 예산요구 시와 집행 당시 퇴직인원이 14명으로 같음에도 예산요구액과 집행액은 1억 2,780만원과 2억 9,292만원으로 집행액이 요구액의 2.3배에 해당함.

- 2020회계연도 법사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¹⁴⁾ 바와 같이 국가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액과 실제 지급액의 불일치가 발생으로 빈번한 예산의 전용 또는 불용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14) 법사위,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원 소관 검토보고서 p.12-16.

□ 이에 ① 2026년도 2월 노사정 TF가 근로자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점, ② 근로자 퇴직금 예산 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⁵⁾.

15) 2025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보조원 등 90명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8억 1,200만원임(202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 p.15).

3. 감사활동경비(1131-303):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제도 개선 필요

-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감사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4억 2,300만원 중 124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6%)되고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감사활동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감사활동경비	9,234	14,512	98	△187	14,423	12,485	89	1,849

자료: 감사원

- 감사원은 행정의 전산화 등 업무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디지털 자료 생성·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순 자료 제출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감사 사각지대 역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16)의 직무감찰·회계

16)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검사 중 부여되는 자료제출요구 권한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¹⁷⁾ 실시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

- 한편, 감사원은 2020년 10월에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준·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2022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의 전결권자 하향 및 필요성·보충성·관련성 등 상세기준 조정을 통하여 실시요건을 완화한 이후, 디지털 포렌식 실시 건수가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¹⁸⁾

<최근 5년간 디지털 포렌식 실시내역>

(단위: 건)

감사연도 (실지감사 착수연도)	건수
2021년	10
2022년	65
2023년	79
2024년	30
2025년	10
합계	194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

-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6년 1월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익 보호, 내부통제 및 자료관리 강화, 수사자료 제공 제한 등을

17)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 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의미함.

18) 감사원 현황보고 (2026. 4. 23.) 이외에도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감사 등 논란이 되었던 6대 감사는 682개 매체에 포렌식을 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다수의 포렌식을 실시하였고, 해당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 관련 자료를 취득하게 한 사실 또한 있음.

위하여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감사원훈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¹⁹⁾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디지털 포렌식 남용 가능성 차단 및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재개정 및 선별실 설치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감사원은 2026년 1월에 관련 감사원훈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포렌식 실시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나, 실시요건의 핵심적인 내용인 필요성·보충성·관련성 등 구체적인 실시 판단기준은 2022년 6월 개정 이후 일부 완화된 상태임.
- 특히, 종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필요성 요건 중 “중대한 사안”이라는 개념표지와 보충성 요건 중 2회 이상의 서면 자료 요구, 위조·인멸 등의 “정황” 요건 등이 삭제된 상황인바, 자의적이거나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 포렌식 실시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 권익 보호 강화)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별·추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알 권리 보장
- (내부통제 강화)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통제 강화
- (자료관리 강화) 디지털 자료의 선별·추출 후 복제본을 즉시 폐기하고 예외적인 경우(법정에서 검증 등)에만 보관
- (수사자료 제공 제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관련 증거서류 제공 시 포렌식 결과는 제외

<디지털 포렌식 실시 판단기준 관련 규정 연혁>

내용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²⁰⁾ (2022. 4. 4. 시행)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 (2022. 7. 11. 시행 이후 현행)
필요성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하려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이 <u>변상판정이나 중징계(동일 수준의 문책을 포함한다) 사유 또는 범죄혐의에 해당되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하거나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u> 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하려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이 <u>감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사실관계에</u>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여야 한다.
보충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의 입증 등에 필요한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가. <u>감사자료에 대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u> 나. <u>안티포렌식 행위를 비롯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인멸, 은닉, 위·변조의 정황이 있는 경우</u> 다. 제16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디지털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는 경우 등 그 밖에 <u>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u> 이 있는 경우	감사자료에 대한 <u>인멸, 은닉, 위·변조의 우려</u> 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등이 있어 디지털포렌식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의 입증 등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성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저장매체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수집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당해 감사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좌동

자료: 감사원

○ 둘째, 감사원은 일정한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전체를 이미징²¹⁾

하여 복제본을 생성한 후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거나 디지털

20) 현행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조(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필요성·보충성·관련성 검토)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증거 및 디지털 증거물에 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 수집 후 폐기할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는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에 활용되는 장비 및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21)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 전부를 비트 열(bit string) 방식으로 원본 자료와 동일하게 복사하여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형태(포맷)의 파일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봉인·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²⁾, 이 경우 감사자료를 선별·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선별실)는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²³⁾

- 최근 디지털 저장매체 용량 고도화 및 보안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감사현장에서 자료를 직접 선별하여 제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감사자 등 디지털저장매체의 관리자 측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참고하여²⁴⁾ 별도의 선별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⁵⁾

22)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수집) ②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으로부터 선별 추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동의를 받아 디지털저장매체의 복제본을 생성한 후 복제본으로부터 디지털 자료를 선별 추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리자등의 동의를 받아 복제본을 봉인하여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 자료의 수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등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봉인하여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한 후 디지털 자료를 선별 추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디지털저장매체 관리자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디지털 자료와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시값을 생성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감사원은 감사현장에서 자료 획득, 조사 등의 업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사기간 종료 후 감사원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입장임.

2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2조 (수집) ①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25) 한편, 감사원은 복제본을 감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주로 감사원 조사실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4.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공사 수요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등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는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설비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감사 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에는 예산현액 20억 1,200만원 중 15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2,012	2,012	-	-	2,012	1,542	32	438
·감사원 직장어린이 집 운영	303	303	-	-	303	302	-	1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1,138	1,138	-	-	1,138	904	-	234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571	571	-	-	571	336	32	203

자료: 감사원

가.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 공사 수요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내역사업인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사업²⁶⁾의 일환으로 추진된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사업은 감사교육원 건물의 피트 공간²⁷⁾ 안에 설치된 노후 오배수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고, 3,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회계연도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시설계비 (420-02)	16	13	-	3
공사비 (420-03)	272	63	32	177
시설부대비 (420-05)	1	-	-	1
합 계	289	76	32	181

자료: 감사원

26) 2025회계연도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사업 결산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① 빌딩자동제어 설치공사	192	171
②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289	77
③ 대강당옆 복도 바닥교체	7	6
④ 감사교육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83	82

27) 지하 또는 바닥 아래의 설비 공간

□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공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임.

○ 우선, 2025년도 예산 2억 8,900만원 중 7,7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이 26.6%로 매우 저조하며, 공사 일정 역시 9월 중순 실시 설계, 12월 중 교체공사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면서 공사비 일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예정된 기한을 넘겨 다음 연도 1월 13일에 완료되었음.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 공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	집행액	이월액	비고
실시설계	'25.9.16.~'25.10.15	13	13	-	
교체 공사	'25.12.1.~'25.12.21	96	64	32	실제 준공일 '26.1.13.(23일 지체)
합계		109	77	32	

자료: 감사원

○ 공사 내용 측면에서는 사업 목적인 ‘오배수 기능 회복’을 위한 예산 및 ‘악취 제거’를 위한 환기 덕트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저수조 펌프 설치 등)에 없던 ‘감사교육원 1층 화장실 시공’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62.6%(1억 8,1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음.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사업 요구 대비 실제 개선 현황>

계획 공사	실제 공사	변경 사유
피트내부 저수조펌프 설치	피트내부 저수조펌프 설치	-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
남자욕탕 배기팬 교체	-	교체 없이 악취문제 해소
-	감사교육원 1층 화장실 시공	직결된 배관을 통해 화장실 벽체 등 오배수 누수 확인

자료: 감사원

- 따라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공사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에 부합하는 철저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
- 감사원은 공사의 목적(오배수 기능 회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환기 덕트공사 등을 과감히 삭제하여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화장실 공사 등에서 전면 거울 및 조명 등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는 ‘수선 방식’을 적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설명임.

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사업 변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ESS 통합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 내역사업인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사업²⁸⁾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70.4%인 5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시설계비(420-02)	25	15	-	10
공사비(420-03)	655	487	-	168
감리비(420-04)	48	14	-	34
시설부대비(420-05)	5	-	-	5
합 계	733	516	-	217

자료: 감사원

-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은 종전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²⁹⁾ 및 부칙 제2조 및

28) 2025회계연도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사업 결산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①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13	13
② 제2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243	234
③ 본관 터보냉동기 분해점검	54	55
④ 본관 5~8층 LED 전등 교체공사	94	86
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733	516

29) 2023년 8월 1일 이전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

제3조³⁰⁾에 따라 추진되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함³¹⁾.

○ 감사원의 경우 계약전력이 각각 1,500kW와 1,900kW인 본관 및 제4별관(제1별관 포함) 등 총 2개 건축물이 법적 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각각 75kW, 95kW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내역>

구 분		본 관	제4별관 (제1별관포함)	제2별관	제3별관
ESS 설치 의무 대상	계약전력(kW)	1,500	1,900	100	618
	설치의무	○	○	×	×
ESS 설치 및 계약전력		통합 202kWh	×	×	

자료: 감사원

용)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 4. (생략)

3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3-161호, 2023.08.01.>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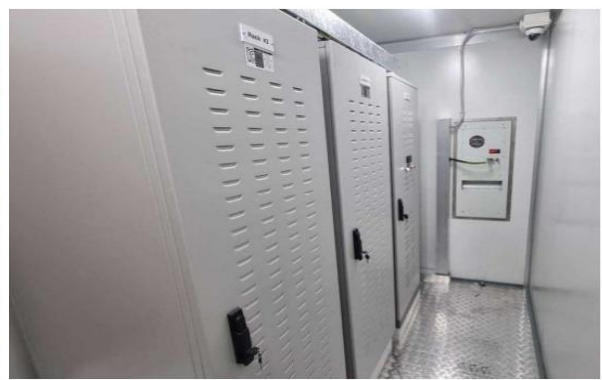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1) 참고로, 2023년 8월 1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종전 의무대상 건축물은 제외됨.

○ 그런데 감사원은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개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통합하여 본관 1개소에 더 큰 용량(200kW)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본관과 제4별관이 동일 부지 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ESS를 개별 설치할 경우 장비 점유 면적과 설치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경제적 낭비가 우려되었고, 건축물별 의무설치용량을 합산한 용량 이상을 설치할 경우 의무이행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현황>



자료: 감사원

○ 다만, 현행 관련 법령은 ESS를 건축물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접 건축물 간 통합 설치는 법령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³²⁾.

- 또한 사업 변경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예산집행심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³³⁾ 관계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도 실시절계가 끝난 후에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³⁴⁾.

○ 따라서 향후 사업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ESS 통합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 건축물 간 ESS 통합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법령에 ESS 통합구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용량 설치를 이행하였으나, 향후 법령 및 실무기준 등을 통해 집합건물 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2) 규정상 “건축물별 설치”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실제 발생 지점에서 확보하고 건물별 에너지 관리와 의무 이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설계로 이해됨. 현재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제도의 주 목적이 공공 건축물의 피크전력 저감 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인 점을 고려하여 피크절감 대상 건축물의 일별 전력피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25.4.23. 감사원과 한국에너지공단 협의 내용 중)

3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22페이지

다.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감사원에 따르면, ESS 실시절계 계약은 2025년 3월 12일에 완료하였고, 실제 공사 계약은 3월 21일부터 진행하였음. 그런데 ESS 통합 설치에 관한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실무협의 결과는 2025년 4월 23일에 메일로 확인받은 것으로 파악됨.

5.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및 임의적인 이월 지양 필요 등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 시스템(OASYS),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보안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최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24억 2,400만원을 반영한 2025년 예산현액 185억 3,500만원 중 13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6,111	16,111	2,424	59 △59	18,535	13,597	3,593	1,345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	1,781	1,781	-	△59	1,722	1,699	-	23
·OASYS 구축·운영	12,854	12,854	2,424	59	15,337	10,431	3,593	1,313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40	540	-	-	540	535	-	5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운영	936	936	-	-	936	932	-	4

자료: 감사원

□ 내역사업인 업무포털시스템(OASYS³⁵⁾) 구축·운영사업은 전자감사 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4억 2,400만원과 세목 조정액 5,900만원을 반영한 2025년 예산현액은 153억 3,700만원이었으나, 이 중 68%인 104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OASYS 구축·운영	12,854	12,854	2,424	59	15,337	10,431	3,593	1,313
-일반수용비(210-01)	213	213	-	-	213	212	-	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1	121	-	-	121	79	-	42
-임차료(210-07)	115	115	-	-	115	-	115	-
-관리용역비(210-15)	1,548	1,548	-	59	1,607	1,607	-	-
-일반연구비(260-01)	7,067	7,067	98	-	7,165	5,418	1,747	-
-자산취득비(430-01)	3,790	3,790	2,326	-	6,116	3,115	1,731	1,270

자료: 감사원

35) OASYS(Open Audit SYStem)는 감사원 부서업무, 지식관리, 교육, 연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구축한 내부 업무 포털 시스템으로,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의사진행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됨.

□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사업은 철저한 공정 관리와 예산 이월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동 사업은 AI 기반 비정형자료 분석·활용 기능 마련 등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년(2024년~2025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으나³⁶⁾,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2~3개월가량 사업 지연과 예산사정 등으로 사업 완료 예정일도 2026년 6월에서 10월로 변경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음³⁷⁾.

특히 해당 사업은 이미 2024년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³⁸⁾.

36) 감사원은 2024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2024년(1차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2025년(2차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37) 차세대 OASYS 구축 2차 사업은 AI 기반 비정형자료 분석·활용 기능 마련 등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25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후 ’26년에 예산(2,465백만원)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임.

(*) ‘사용자 맞춤형 포털 구축’ 과제 예산이 ’25년 760백만원(ISP 산출액 3,823백만원)만 반영된 후 ’26년 2,465백만원 추가 반영되었음

(**) 계약명: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계약기간 ’25. 8. 4.~’26. 10. 6.(14개월), 총 계약금액 8,012백만원

- 개찰 결과 단일 응찰로 2회 유찰되어 단일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일정 대비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으나, ’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가피하게 관련 상용소프트웨어를 지연 설치하게 된 것(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2차) 계약 관련) 외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당초 ’25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설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26년 5월 이후 설치하는 것으로 ’25. 11. 4. 변경 통보하였음.

38) OASYS 구축·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일정 체계적 관리 필요(법사위 ’24 결산심사)

-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월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최초 계획	실제 일정	추진 내용
1차	2024. 1~3월	2024. 1.~3월	▪ 제안요청서 작성
	2024. 1~3월	2024. 3월	▪ 과기부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참여지원(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
	2024. 1~3월	2024. 4~5월	▪ 업무망 VDI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관련 부처 보안성 검토
	2024. 4~6월	2024. 5~7월	▪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후 우선협상 대상자(KT 컨소시엄) 선정
	2024. 5~6월	2024. 8월	▪ KT컨소시엄과 기술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4. 8. 29. ~ 2025. 4. 26.)
	2024. 6~10월	2024. 8~12월	▪ 업무 분석, 현장실사 및 설계
	2024. 6~10월	2024. 9~ 2025. 4월	▪ 자재발주 및 시공 / 시스템 구매 / 장비 설치 및 구축
	2024. 12월	2025. 5. 12.	▪ 사업 완료(준공)
2차	2025. 3~4월	2025. 4.~6월	▪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재공고 - 개찰 결과 단일 응찰로 2회 유찰
	2025. 4~5월	2025. 6.~8월	▪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수의시담 및 수의계약 체결((주)유엔파인 컨소시엄) (계약기간 2025. 8. 4. ~ 2026. 10. 6.)
	~2026. 1월	~2026. 6월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완료, 주요 개발사항 완료
	2026. 2~4월	2026. 6~7월 (예정)	▪ 통합테스트(예정)
	2026. 5~6월	2026. 8~10월 (예정)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사업 완료(예정)

자료: 감사원

○ 따라서 감사원은 과거의 지적 사항과 현재의 일정 변경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 이월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감사원은 당초 시스템 구축 개발인력의 상주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감사원의 기존 공간(제4별관 3층 영상세미나실 및 회의실 등)을 활용함에 따라 임차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후 당초 목적과 달리 해당 임차료를 개발업체의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리스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계약기간 미도래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음.

<임차료 예산편성내역 대비 집행현황>

(2026.6.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도				2026년도	
내역(각목명세서)	편성액	집행액	이월액	예상 집행내역	예상 집행액
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차료 [월 임차료(11,500천원) 및 사업기간(10개월) 적용]	115	-	115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리스료	115

자료: 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함.³⁹⁾

해당 임차료 예산은 발생 사유가 소멸하여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불용 처리했어야 하며, 사고이월 등 합법적인 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월하여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정산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식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이월 제한)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편성된 임차료로 별도 사무공간 임차가 어려워,⁴⁰⁾ 내부 공간을 개발공간으로 제공하는 대신, 개발업체의 시설·장비·물품

3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0) 감사원은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의 계약상대방(개발업체)의 직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를 당시 감사원 인근 사무공간의 월세 등 시세를 고려하여 300백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기재부)에는 115백만원만 반영되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15백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사무공간을 위한 임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임.

임차·리스 등 직접경비를 임차료로 지급·정산하는 내용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경비를 이월하였다는 설명임.

□ 셋째,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⁴¹⁾을 장기 계속사업 명목으로 사고이월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계약 중에 발생한 낙찰차액은 3억 300만원으로, 이 중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관련하여 2억 1,8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전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낙찰차액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액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2025~2027년)	1,448	1,414	34	조달수수료(11,205,990원) 집행 외 불용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6,956	6,852	1041)	장기계속계약(계약기간: 2025. 8. 4.~2026. 10. 6.)에 따른 사고이월(사업 종료 후 불용 예정)
차세대 OASYS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569	455	114	
감사원 전용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113	79	34	불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206	205	1	불용
2025년 공공감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490	483	7	조달수수료(3,996,880원) 집행 외 불용
감사원 사이버보안센터 위탁운영(2024~2026년)	934	925	9	조달수수료(7,373,560원) 집행 외 불용
계	10,716	10,413	303	

1)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낙찰차액 대신 집행잔액 의미로 사용
자료: 감사원

41) 수의계약의 경우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 감사원은 낙찰차액을 계약 기간(2025. 8. 4.~2026. 10. 6.)이 종료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관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낙찰차액 또는 집
행잔액을 사고이월한 것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이월을 허용하는 「국가
재정법」의 이월제도⁴²⁾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낙찰차액의 처리 및 사고이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

4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
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
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6.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1142-651): 동일 목적 계약의 임의적 분할 개선 필요

□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감사요원의 감사능력 배양, 회계업무 담당자의 회계지식과 실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교재 제작, 강사 초빙 및 감사교육원 자산 취득 등을 내용으로 함.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감사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2025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수입 세입예산은 6억 1,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5억 7,610만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출예산은 6억 7,600만원 이었고, 그중 6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676	676	-	2 △2	676	635	-	41
·상용임금	199	199	-	△2	197	172	-	25
·일용임금	-	-	-	2	2	2	-	-
·일반수용비	267	267	-	-	267	261	-	6
·특근매식비	8	8	-	-	8	8	-	-
·복리후생비	3	3	-	-	3	1	-	2
·국내여비	33	33	-	-	33	33	-	-
·고용부담금	22	22	-	-	22	15	-	7
·자산취득비	144	144	-	-	144	143	-	1

자료: 감사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은 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음(제7조제1항).⁴³⁾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포함됨(제26조).⁴⁴⁾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타. (생략)

3.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4) (생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규정된 여러 가지 수의계약사유는 계약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 반경쟁을 원칙으로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의계약사유는 계약의 목적과 그 상대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일한 계약을 임의로 여러 건으로 분할하였다고 해서 그 분할된 수건의 계약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⁴⁵⁾

따라서 동일인과 같은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사유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계약법」을 잠탈하여 그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교육원의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강의실 규모·시설요건 및 공사 가능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일 계약으로 확정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 다) (생략)

6) · 7) (생략)

나. ~ 자. (생략)

② ~ ⑤ (생략)

45) 대법원은 건설업의 수행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공사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감사교육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 139-14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교육동 7,549m², 생활관 3,067m²로 구성됨.

교육동에는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1·2, IT교육실, 온라인강의실 1~4 등이 위치하며, 실시하는 강의의 유형 및 수강인원에 따라 각기 다른 강의실이 사용되고 있음.

<감사교육원 교육동 시설>

강의실	면 적	수용인원	강의실	면 적	수용인원
대강당	233.28m ²	131명	중강의실 1·2	116.64m ²	48명
세미나실	155.5m ²	48명	IT교육실	103.68m ²	40명
대강의실	155.5m ²	70명	온라인강의실 1~4	28.8m ²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25년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1억 3,719만원을 사용하여 여러 강의실의 스크린, 칠판, 프로젝터 등 설비를 교체하였음.

- 이는 기존 칠판, 프로젝터 등 설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음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

<감사교육원 교육동 개선 대상 설비(2025)>

구 분		설치일	내용연수	비 고
세미나실	스크린	2007 이전 ¹⁾	10년	내용연수 경과
	칠 판	2019.02.18.	10년	내용연수 미경과 ²⁾
	프로젝터	2012.03.30	9년	내용연수 경과
	무선마이크	2015.01.26.	9년	내용연수 경과
	컴퓨터	2016.06.20.	5년	내용연수 경과
대강의실	스크린	2007 이전 ¹⁾	10년	내용연수 경과
	칠 판	2019.02.18.	10년	내용연수 미경과 ²⁾
	프로젝터	2010.09.06.	9년	내용연수 경과
	무선마이크	2015.01.26.	9년	내용연수 경과
	컴퓨터	2016.06.20.	5년	내용연수 경과
중강의실 1	스크린	2007 이전 ¹⁾	10년	내용연수 경과
	칠 판	2019.02.18.	10년	내용연수 미경과 ²⁾
	프로젝터	2014.12.31.	9년	내용연수 경과
	무선마이크	2015.01.26.	9년	내용연수 경과
	컴퓨터	2016.06.20.	5년	내용연수 경과

주: 1) 설치 후 오랜 기간 경과로 정확한 설치일 확인 불가

2) 칠판의 경우 내용연수는 경과하지 않았으나 오랜 사용으로 얼룩 등이 발생하여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 교육장비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교체

자료: 감사원

그런데 감사원이 이들 설비의 교체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보면, 당사자와 목적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임에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분할한 사례가 확인됨.

<감사교육원 설비 개선 관련 계약 체결 내용(2025)>

구 분		업체	계약일	계약금액(원)	계약유형	수의계약사유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실)	스크린·철판	A	2025.10.24. ~11.10.	52,723,000	수의계약	1억원 이하 여성기업
물품 구매·설치 (세미나실 등)	프로젝터	B	2025.11.12.	8,350,000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무선마이크	B	2025.11.27.	18,480,000	수의계약	
물품 구매·설치 (세미나실 등)	컴퓨터	C	2025.11.13.	3,021,000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세미나실의 스크린과 철판의 개선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른 종류의 설비를 묶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세미나실·대강의실 및 중강의실 1의 무선마이크, 프로젝터 등을 교체함에 있어서는 근접한 시기에 같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기준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설비의 종류에 따라 계약을 나누어 총 2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수의계약 2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하면, 총 2,683만원으로, 수의계약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함.

□ 이러한 방식의 수의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감사연구활동경비(1151-351): 연구용역비의 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선정 필요 등

- 감사연구활동경비는 감사정책의 수립 지원, 감사방법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감사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 구입, 논문집 및 보고서 발간, 전문가 자문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2025회계연도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의 세출예산은 5억 3,500만원 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5,900만원 중 총 5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감사연구활동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연구활동경비	535	535	84	40	659	607	30	22
·일반수용비	175	175	-	-	175	172	-	3
·공공요금 및 제세	5	5	-	-	5	4	-	1
·일반용역비	90	90	-	40	130	124	-	6
·국내여비	20	20	-	-	20	20	-	-
·국외업무여비	29	29	-	-	29	22	-	7
·관서업무추진비	21	21	-	-	21	21	-	-
·정책연구비	190	190	84	-	274	239	30	5
·자산취득비	5	5	-	-	5	5	-	-

자료: 감사원

가. 연구용역비의 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선정 필요

-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3,000만원에서 8,4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내역(2023-2025)>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3년도	120	120	-	150	270	210	60	-
2024년도	220	220	60	80	360	270	84	6
2025년도	190	190	84	-	274	239	30	5

자료: 감사원

-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정책연구용역 차년도 이월 내역(2023-2025)>

(단위: 백만원)

구 분		추진 경과		계약 유형	계약기간	금 액	
		심의위	계약일			계약	이월
2023	감사원 기능과 역할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발전방향	08.21.	09.11.	수의	2023.09.11. ~2024.03.03.	30	30
2023	미국 연방정부의 내부통제 및 재정 관리 법제와 운영실태 연구	08.21.	12.01.	제한 경쟁	2023.12.01. ~2024.03.31.	30	30
2024	공공감사 분야 국가자격제도 구축 방안	06.18.	07.04.	수의	2024.07.04. ~2025.03.03.	60	54
2024	중기 재정건전성 진단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1.22.	12.05.	수의	2024.12.05. ~2025.04.30.	30	30
2025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와 감사시사점	10.23.	11.11.	수의	2025.11.11. ~2026.03.10.	30	30

자료: 감사원

□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고이월 등을 허용하고 있음(제23조, 제24조 및 제48조)⁴⁶⁾.

○ 그런데 2023년도부터 정책연구비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이 연구과제를 하반기에 선정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경우가 다수인데, 연구과제 선정이 늦어 연도 내 연구용역을 완료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연도 말에 개최되어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용역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연구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46)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 감사원은 하반기 업무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 착수가 11월경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2024년도 이후 수의계약 방식 활용으로 연구과제·연구자 선정부터 용역 착수까지 약 2주가 소요되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시기를 앞당길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최근 정책연구비의 반복적인 이월은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은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해 연구수요를 조기에 발굴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연구과제·연구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 점검 및 시정 필요

- 2025년도 감사연구활동경비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연구원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감사학회’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 1건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계약 내역				계약 유형
		계약명	계약 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감사연구 활동경비 (1151-351)	정책연구비 (260-02)	주요국 감사원 성과감사 발전과정과 성과 연구	30	한국 행정학회	25.4.-25.8.	수의
		정부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공감사체계 개선방안	30	○○○○ 학회	25.4.-25.11.	수의
		적극행정을 위한 인사분야 성과감사 전략 및 접근방법 개발	30	○○대 산학협력단	25.5.-25.12.	수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정책 방향	30	한국 감사학회	25.7.-25.11.	수의
		국가결산 및 결산감사 신뢰성 제고방안	30	한국 행정학회	25.8.-25.12.	수의
		공공부문 AI 전환 해외사례 및 시사점	10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5.10.-25.12.	수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감사시사점	30	○○○○ 학회	25.11-26.3.	수의

자료: 감사원

□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은 감사연구원 예산에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감사연구원의 경제감사연구팀장, 사회감사연구팀장, 행정감사연구팀장, 디지털감사연구팀장이 되며(제3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4항).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된다.

④ 내부위원은 경제감사연구팀장, 사회감사연구팀장, 행정감사연구팀장, 디지털감사연구팀장이 된다.

⑤ 외부위원은 감사연구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감사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⑥·⑦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개의할 수 있다.
-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한국감사학회’의 연구용역의 선정을 심의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사)한국감사학회’의 운영이사를 겸직 한 감사연구원 팀장 및 한국감사학회의 임원이 심의에 참여하였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성명	소속·직책	자격	비고
신OO	감사연구원 연구부 부장	내부위원(당연직·위원장)	
김OO	감사연구원 연구부 경제연구팀장	내부위원(당연직)	한국감사학회 운영이사
이OO	감사연구원 연구부 사회연구팀장	내부위원(당연직)	
유OO	감사연구원 연구부 행정연구팀장	내부위원(당연직)	평가 제외 (과제 담당관)
차OO	감사연구원 연구부 디지털연구팀장	내부위원(당연직)	
김OO	OO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한국감사학회 이사
이OO	OO대학교 지능데이터융합학부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정OO	OO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한국감사학회 운영이사
이OO	OO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이OO	OO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김OO	OO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김OO	OO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부위원(위촉직)	

자료: 감사원

□ 감사연구원은 연구용역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감사연구원 공동 학술대회의 경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감사연구원은 민간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국가기관과 민간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상호 분담함. 감사연구원은 2025년 타 기관과의 10건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음.

그런데 이 중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한 인쇄 및 행사 업체 등에 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6건이고, 4건의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아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법인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2025회계연도 학술대회 등 공동개최 및 경비지급 현황>

연 번	행사명	자금 이체일자	지출금액 (원)	공동개최 학회에 경비 지급 여부	비고
1	2025년 제1회 공공감사포럼	2025-05-23	2,700,000	X	다과 업체에 지급
2	2025년 제1회 적극행정포럼	2025-05-27	4,346,100	X	인쇄 및 다과 업체 지급
3	2025년 제2회 공공감사포럼	2025-06-18	2,996,800	X	인쇄 및 행사 업체에 지급
4	한국감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2025-09-25	3,322,760	O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를 한국감사학회에 지급
5	2025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2025-11-10	3,000,000	O	인쇄비를 한국재정학회에 지급

연 번	행사명	자금 이체일자	지출금액 (원)	공동개최 학회에 경비 지급 여부	비고
6	2025년 제3회 공공감사포럼	2025-12-05	3,392,300	X	인쇄 및 행사 업체에 지급
7	제8차 감사연구원-고려대 정책대학원 공동학술세미나	2025-12-23	4,000,000	X	인쇄 및 행사 업체에 지급
8	2025년 감사연구원,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25-12-24	5,000,000	O	인쇄비를 한국정책학회에 지급
9	감사연구원,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학술대회	2025-12-29	3,000,000	O	인쇄비, 다과 구입비를 한국헌법학회에 지급
10	2025년 제4회 공공감사포럼	2025-12-29	2,986,400	X	행사 업체에 지급

자료: 감사원

- 이러한 집행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연구원이 공동주최에 따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그 집행은 법인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감사원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국회에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분석에 다음과 같이 오류가 확인됨.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임차보증금 3억 7,000만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임차보증금 2억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시 재무제표상에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임차보증금 계상 등에 있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 시 자산 관리부서로부터 임차보증금(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부 등) 목록을 별도로 제출받아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으로 임차보증금 계상 관련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예산 적정 편성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용임금 예산을 감액해 일용임금의 증액 재원으로 조달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결원 발생 시 일용직을 우선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하나, 위 결원을 일용직으로 보충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임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감사원은 상용임금 미집행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집행하는 데 충당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상용임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	○ 감사원 본원 청사의 환경관리 범위 증가 및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 발생 등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까지 업무 대체 등을 위해 부득이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며, 부족한 일용임금 재원을 상용임금 등에서 충당한 바 있음 - 앞으로 상용임금에 편성된 예산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6년 일용임금 예산은 '25년 64백만원 대비 26백만원 증액한 90백만원으로 편성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결산심사 곤란 [시정]	○ [지적사항]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감사원장(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과, 같은 기간 감사원 출장비 세부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대법원 2025. 8. 14. 2025두33659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해당 (정보공개를 위한) 작업에 시일이 상당 소요된다.”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결산심사가 불가능한 실정임.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사용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 및 출장여비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사를 적극 지원하였음 ○ 한편, 감사 출장여비 집행증빙의 경우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익명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출이 지연된 바 있으나, - 제출방법 및 범위 등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일반연구비 용역 과제 공개 확대 및 수의계약 비중 축소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은 「연구성과 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감사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 연구 성과물만을 공개 대상으 로 정하여 감사원이 집행하는 일반연구비 과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신에 공개에 적 합한 일반연구 과제를 선정하 여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있으나, 공개 건수는 2022년 7건에서 2024년 0건으로 감소하 였음. - 또한,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 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 산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 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일반 연구비로 수행한 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계약시 수 의계약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감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공개될 경 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연구용역보고서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대외 공개하여 왔으며, - 또한, 감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 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 약을 체결하였음 * (소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 (특수한 지식)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 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 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 는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 앞으로도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연구보고서 공개 건수: (‘24년) 1건(‘25. 7. 28. 공개) → (‘25년) 3건 - 또한, 진행 중인 감사사항의 노출 등으 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연구용역의 경우 수 의계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 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이 2020~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재심의 중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처리된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2024년은 처리건수 58건 중 51건이 기각·각하되는 상황에서 3건만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음.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임.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사건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 개선에 이어 2025년 5월 “재심의 관련 결재 단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에 재심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23년) 475일 → (‘24년) 405일 → (‘25년) 231일 - 다만, 향후에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국내여비 예산의 타사업 이·전용 지양 필요 [주의]	○ [지적사항]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2024년 사이에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전용 등이 이루어졌음. - 특히 2024회계연도에도 국내여비에서 다른 비목 또는 세부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전용 및 세목·내역변경 되었는바, 2022년 3억원, 2023년 2억 5,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재산정하여 실소요에 맞게 감액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득이하게 발생한 타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한 바 있으나, - 이러한 연례적 전용 등을 이유로 2025년도 감사출장 국내여비는 전년(5,943백만원) 대비 1,345백만원(22.6%) 감액된 4,598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있음 ○ 이에, 2025년부터는 감사활동 국내여비를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사출장을 위한 목적만으로 집행하고 타 사업으로의 예산 변경을 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2026년도 국내여비 예산은 이전 결산 실적 및 실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5,173백만원)하였고, 이후에도 타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필요 [주의]	○ [지적사항] 감사원은 연 3회 기준으로 편성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연 6회로 확대하면서, 하반기 여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내역변경을 통해 3,972만원을 증액하였음. - 그러나, 조직 개편 후 실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인 2,974만원을 불용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	○ 향후 사전컨설팅 관련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2025년부터는 여비 예산을 편성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내역변경 등 예산 변경을 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2024년 사전컨설팅 접수는 82건으로 2023년 76건 대비 7.9% 증가하였지만, 제도 도입 시점인 2019년 101건에 비해서는 19% 감소한 상황임. - 사전컨설팅의 규정상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임. 2024년의 30일 내 처리율이 33.3%로 2023년 62.5% 대비 절반 수준이며, 2019년 53.7%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였음. 60일 이상 장기 처리 건수의 비율 또한 22.8%(13건)를 차지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의 적시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절차간소화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것	○ 최근 감사대상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이 활성화되면서 자체감사기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등을 감사원에 신청하는 추세로 * 다수기관 관련 사안, 기관·부서간 이견 사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등 - 이러한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을 성급히 판단할 경우 사후에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및 내부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로 ‘25년에는 실제 처리한 컨설팅 46건(취하 24건이 제외된 수치) 중 32건(69.6%)을 30일 내에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9) 적극행정 지원 사례집 발간비 이월 및 연례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2024년도 3건의 발간 계약이 모두 10월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중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차 개정판’ 계약액 전액인 5,300 만원이 이월되었음. - 또한, 최근 3년간 총 7건의 발간물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그 중 6건이 동일 기업과의 계약임.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 관련 발간 사업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출 것	○ 2025년도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례집*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관리로 사고이월 없이 모두 연내 집행하였고 * 모범사례집,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사전 컨설팅 사례집 등 총 3건 -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및 5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 앞으로도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발간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입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 공사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 및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바닥 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공사’가 사전조사 결과와 달리 규모가 축소되어, 공사비 예산액 15억 700만원 중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집행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이 60% 수준임. -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금액 5억 7,5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을 자산취득비 1억원, 임차료 1억 4,500만원, 타 내역 사업을 위한 공사비 2억 100만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시설공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전용 등 목적외 사용을 지양할 것	○ 향후 시설공사 시행 시 면밀히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2025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 예산은 전용 등 예산조정 없이 편성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1) OASYS 구축·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일정 체계적 관리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은 OASYS(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변화된 IT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2026년에는 디지털 감사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예정이었음. - 당초 2024년 12월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과기부 대기업 참여제외 예외 인정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4억 2,400만원이 이월되고 준공 예정일이 2025년 5월로 연기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월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앞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차세대 OASYS 구축 1차년도 사업(2024년)은 2025년 5월 준공하였고, 이와 관련한 예산 사고이월액(24억여원)도 같은 해 6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2) 국외업무 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정 필요 등 [시정]	○ [지적사항] 감사원장 등 5명은 2024. 6. 12.부터 21.까지 G20 감사원장회의 등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경비로 총 8,441만원을 집행하였음. - 위 사업은 감사원의 예산요구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음. - 감사원은 이로 인해 당초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타 사업(감사활동경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 이와 같은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전용 제한(제46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가가 확정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G20 감사원장 회의 참석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 취지를 위배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추진방식을 시정할 것	○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로 ‘25년 예산에는 G20 감사원장회의(SAI20)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년에도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3)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재검토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의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임. - 또한,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2024년 사이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짐. - 그리고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 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관련>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관련, 재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시행한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 개선에 이어 2025년 5월 15일 “재심의 관련 결재 단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이로 인해 2025년 12월말 기준 재심의 처리 기간이 231일로 단축*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23년) 475일 → (‘24년) 405일 → (‘25년) 231일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관련> ○ 감사원은 감사활동 국내여비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득이하게 전용 등을 통해 타 사업에 충당한 바 있으나, - 2025년부터는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여비를 타 사업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또한, 2026년도 국내여비 예산은 이전 결산실적 및 실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5,173백만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타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관련> ○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경우에 한하여, 감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현황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되어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 등 - 특히 일반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통상 진행중인 감사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감사계획 및 방향 등이 외부에 공개되어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25. 1월부터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수의계약의 사유 및 적용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감사진행에 따른 외부 노출의 우려가 없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감사활동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감사결과 조치금액’과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효과나 국민안전 관련 감사활동의 성과는 위 지표로 측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① 예산절감, ② 수입증대, ③ 국민편익, ④ 지출합리화, ⑤ 재산증가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감사원은 세부 내역별 달성치를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기대효과 금액에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이 감소한 부분,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예산 절감액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 관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추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를 개발하며,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세부내역별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감사활동의 성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도개선 등 감사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연구원에서 자체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수립하게 되는 새로운 성과지표는 2027년도 성과계획서*부터 도입할 예정임 * 매년 5월 31일까지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후 기획예산처의 검토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매년 8월말-9월 초경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보완 후 다음해 2월경 최종 확정됨 - 또한, 매년 발간하는 감사연보에 감사결과 조치금액과 기대효과 금액, 기대효과 금액의 종류별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는 등으로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를 공시할 예정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5) 결산검사 시 세수결손에 대한 검사 및 시정요구 필요 [시정]	○ [지적사항]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주의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수추계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음 -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관계부처에 대한 구체적 시정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권고 수준으로 종결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2023·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수 부족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대한 조치 등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 다만, 이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요구가 의결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함(상임위)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최근 2년간(2023~2024년) 세수결손 원인분석, 세수추계 개선대책 및 이행상황을 확인·검토 후, 그 결과를 ‘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하여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연례적 세수부족 관련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25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 세수추계 등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포함하였고, - 위 감사는 ‘25년 1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바,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감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6) 국민감사 청구제도 관련 홍보비 초과 집행 지양 및 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절차 고지 개선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 통지가 지연되고, 청구인에게 지연통지를 하지 않는 상당수 사례가 존재하며, 기일이 지연되어 각하결정이 이루어지는 예가 다수 발생함 - 규칙상 30일 이내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2020~2024년 총 143건 중 30일 이내 결정된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건이 15건임 - 또한 2020~2024년 각하결정 건 중 30일 이내 처리된 건은 0건이고, 2024년 기준 각하 결정에 소요된 평균 일수가 60일을 경과했으며, 감사기간 연장시 청구인에게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6건임 - 국민감사청구 관련 홍보비를 증액 조정하여 집행했지만,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절차 지연시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홍보비 등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한 집행을 지양할 것	○ 국민감사 청구사항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상기관의 서면 답변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사실시 결정을 위해 외부위원(4명)이 참여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처리 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규정상 기한(30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 향후 경미한 기각·각하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결을 확대하는 등 처리기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청구인에 대한 지연 통지와 관련하여 처리 지연 및 통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한편, 홍보비의 경우 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 집행하였으나, - 향후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업무용택시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	○ 감사원은 '24년도 국정감사 현장검증 시 업무용택시비 집행내역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고, '25년도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업무용택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의 자료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 업무용 택시비를 감사활동경비 단위사업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감사활동 현장출장 목적의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것	○ 2025년도 업무용 택시비 예산이 전년(4억 5,000만원) 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확정되는 등 예산 부족에 따라 감사출장 시에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임 - 다만 향후 업무용 택시비 예산 증액으로 감사출장 시에도 이용이 가능할 경우 감사출장 시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경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추후 감액할 필요 [주의]	○[지적사항] 최근 5년간 “감사 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의 연도는 집행률이 모두 50% 미만 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집행액의 2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40%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감사 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예산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소요에 부합 하도록 감액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 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을 설정 할 것	○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감사활동부서 관 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세부 내역사업별 집행실적과 지출소요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 는 등 자체적으로 조정하였음 * ('23년 및 '24년) 1억 8200만원 → ('25년) 9,000만원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활동경비 중 여비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비 2억 5,800만원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 택시비로 전용함 - 여비 예산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이 전용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증액에 해당 - 여비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여비 예산규모 재산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	○ 감사원의 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2023년 기준 77%)이고 여유 재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 국제형사재판소 회계감사 등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최소한의 수준(국내여비 예산 58.2억원의 4%)에서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음 * 환율 상승, 항공요금 및 숙박요금 인상 등으로 ICC 회계감사, 국제회의 참석 예산 부족 ○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은 전년 59억 4,299만원 대비 13억 4,486만원이 감액된 45억 9,81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향후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시정]	○[지적사항]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결정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2023년도 국민제안감사청구 중 공익감사청구가 감사 실시완료 16건, 처리 중 37건으로 감사 실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훈령상 처리기간을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필요 * 2023년 평균 감사처리 기간: 135.4일 훈령 상 처리 기간: 6개월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 감사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4년 1월 1개 과를 신설(4→5개 과)하여 인력(9명)을 보강하고, 감사실시 여부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24년 12월 31일 현재 공익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기간을 평균 38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였음 ○ '24년 접수된 청구사항 중 감사가 완료된 청구사항들의 평균 감사처리기간은 132.3일로 훈령상 처리기간인 6개월보다 단축되었음 - 다만 사안에 따라 전문성 및 복잡한 법리 검토 등이 요구되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에 어긋나고,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려운 일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 - 감사원은 수의계약의 근거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	○ 감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음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 앞으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이 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의거해 특수활동비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기재한 영수증과 집행 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감사원도 해당 지침에 따라 감시해야 할 필요 - 집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임 ○ 감사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 특수활동비는 수사,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감사원은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집행 계획, 지침, 세부내역 및 지출 증거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시 해당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됨	○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 감사원은 대인감찰·첩보 활동, 기밀성 조사활동, 제보자 면담 비용 등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비목에 대해 감사원은 '24년도 국정감사 현장검증('24. 10. 24.) 시, 감사원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지출결의서」 및 「현금 수령자 영수증」 등 내부지침 및 지출증빙을 열람하도록 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위 문서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자료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성과목표 등 추가개발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 예산 및 성과 계획은 단일 전략 목표 및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한다>으로 하고 있음 - 감사원은 프로그램 목표의 ‘배경 및 의의’에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에 대한 언급이 없음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2023년 총 136개 감사사항을 시행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처리하는 등 국가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중 -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 예산운용, 고질적 비리, 소극행정 등 엄단 필요 ○ 아울러 위법·부당사항의 적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소통·지원도 필요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등의 수행을 통해 전략 목표·성과목표 등을 추가 개발할 것	○ 감사원은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독립성’, ‘신뢰’를 핵심가치로 두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음 - 또한, '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감사원은 독립성·중립성·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며, 전략 목표 등에 위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9)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여성 욕실에 대한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사업 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	○ 남·여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여자 욕실을 추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누락이 있었음 -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 과도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설계용역 2회 실시 후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자금을 연말에야 확보 하고 긴급 입찰공고 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사고이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사고이월 등 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1)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인조라탄 벤치 등을 시설부대비(420-05)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등 비목에 벗어난 예산집행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비목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향후 시설부대비(420-05)는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은 본래 11개 층에 대한 공사를 계획했었으나, 공사범위를 2개 층으로 축소하고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비 예산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 다수의 가구·의자 등 물품을 구매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3년도 자산취득을 위해 전용한 사업현황과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계획서를 제출할 것	○ 2023년도 자산 취득을 위한 전용은 1건이며, 앞으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u>2023년도 자산취득을 위한 전용 현황</u> (단위: 백만원) <table><tr><th colspan="3">~에서</th><th colspan="3">~을</th></tr><tr><th>세 부 사업</th><th>목-세 목</th><th>금액</th><th>세 부 사업</th><th>목-세 목</th><th>금액</th></tr><tr><td>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td><td>공사비 (420-03)</td><td>430</td><td>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td><td>자산취 득비 (430-01)</td><td>430</td></tr></table>	~에서			~을			세 부 사업	목-세 목	금액	세 부 사업	목-세 목	금액	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	공사비 (420-03)	430	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	자산취 득비 (430-01)	430
~에서			~을																	
세 부 사업	목-세 목	금액	세 부 사업	목-세 목	금액															
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	공사비 (420-03)	430	노 후 시 설 개보수 및 무 설 정	자산취 득비 (430-01)	43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3)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은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 갱신비용을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SW 사용 라이선스의 만료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할 것	○ 기존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였던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갱신비용을 2025년도 예산부터는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항목을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 대비 46.7%의 증액 조정 (총 9차례 이·전용)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일부 내역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내역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4개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본예산과 상이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계획 수립을 보다 면밀히 하고, 예산 전용 및 증액 조정을 최소화하여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	○ '23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23년도 예산요구('22년 상반기) 이후 국제기구가 출범(SAI20, '22년 8월)하거나 '23년이 되어서야 감사원을 초청(OECD 반부패회의, '23년 3월 초청 등)하는 등 예산요구와 집행간 시기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 보다 면밀히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추진을 가급적 지연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5) 소요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반 용역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함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의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행사대행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전 예산 집행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예산 전용 절차를 진행한 후 관련 예산(37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 다만,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는 것이 5일 지체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음 ○ 앞으로 지출원인행위 전 예산회계시스템에 예산전용 내역을 입력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6)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사용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상의 합법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 -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 등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해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관련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집행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7) ODA 연수과정의 간접비 최소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은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ODA)을 2023년부터 용역체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 운영 및 진행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인하여 일반용역비에서 5,142만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음 - 특히 비슷한 성격의 다른 ODA 사업은 직접 운영하면서 동 사업은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수행하여 간접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간접비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앞으로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추진할 때 항공료와 숙박비는 용역이 아닌 직접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간접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8)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은 ODA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종합시행계획 등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감사교육원 홍보 동영상(국문·영문) 제작비용”을 ODA 일반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ODA 사업 예산을 종합시행계획 및 사업성격 등에 부합하게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앞으로 ODA 예산 집행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9)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시정]	○[지적사항]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2개월 이내)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를 기록함 ※ 법정기한 준수 비율 : 2019년 18.7%, 2020년 10.4%, 2021년 8.7%, 2022년 18.2%, 2023년 3.8% - 2023년 재심의 청구 평균 처리 기간은 474일로 1년을 초과하였고, 전체 재심의 청구 중 62.3%가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 감사원은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24년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평균 처리기간: '23년 474일→'24년 407일) - 향후에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 제고 노력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은 다년간 계약으로서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OASYS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단독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 감사원은 입찰공고문에서 시스템의 업무 구성도 등의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규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유효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경쟁환경을 개선할 것	○ 앞으로도 업체의 원활한 입찰 참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는 충분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1) 변상판정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시정]	○ 감사원은 감사원 변상판정 후 이행기한(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원이 소속장관 등으로 하여금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위탁이행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변상판정 이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기간 도과 사건 20건 중 감사원이 위탁이행 요구를 한 사례는 없고, 이행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위탁이행 요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건임 - 변상판정 이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상금 환수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변상판정 미이행 사항에 대해 공문을 통해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등 변상판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2) 국가결산 검토시 연례적 세수부족에 대한 검토 후 국회에 보고 필요 [시정]	○[지적사항] 최근의 세수결손 상황 에서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결과에 세수결손 관련 감사가 없고,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 에는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음 -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감사결과에서는 세수추계 개 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바 있음에도 2023년 세수 결손 56.4조원, 2024년 세수 결손이 20조원 이상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결산 검토시 세수결손 및 대응방 안에 대한 검토를 미비하게 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연례적 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통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결산감사보고서에 수록해 「 국가재정법」 제61조 등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였음

3.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원활한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19년과 2020년 말 각각 12명과 1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과 2022년 말 각각 43명과 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7월 말 현재 70명이 부족한 상황임 - 결원은 5급 이하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2022년 말 결원 75명 중 6급과 7급에서 각각 32명과 30명 발생 - 3년간 특별채용 인력의 연내 퇴직 대비 충원 인원 수가 적고 그에 따른 결원 인원 수도 증가 (2020년 3명→2022년 8명)하는 추세 ○정원 대비 결원의 증가는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률의 감소 (2020년 98.2%→2022년 96.8%) 및 불용액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결원 규모가 큼에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및 결원 다수 발생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특정직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감사원은 2024년 1월 마련한 ‘감사인력 충원방안’에 따라 2024년 2월 중 법학 전공 석·박사 경력채용 및 7급 감사직 공채 등으로 선발한 29명을 임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2024. 2. 5. 현재 26명 임용 완료) - 7급 일반 행정직 공채 및 감사직 임용 유예자 등 36명을 연내 추가로 임용하여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 또한, 경력채용의 경우 연간 채용 일정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채용 분야는 연중 상시적으로 공고하는 등 특정직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2년 연속 발생한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주의, 제도개선]	○[지적사항] 일반수용비로 2022년 화훼구매(344만원), 2021년 전동스크린 등 설치(219만원), 건물 청소(308만원)에 집행하였는데, 2021년 결산 당시 일반수용비를 용도 외 사용한 건이 시정되지 않고 2022년에도 발생하였음 ○원장의 관사는 업무(공적) 목적과 주거(사적) 목적이 혼재된 공간으로 물품구매,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관사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고 지출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업무와 무관하고 공적 목적이 불분명한 퍼걸러 설치에 2,000만원을,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전동스크린 등에 279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일반수용비의 용도 외 사용 원인을 파악하고 용도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감사원은 감사원장 관사 예산을 사적 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할 것(제도개선)	○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일반수용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부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음 ○ 감사원장 관사 관련 예산은 공적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등 사적 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 감사교육원 교육초빙 강사료 집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도에 전체 초빙 강사료 예산액 2억 7,3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강사료 예산 중 31%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교육과정은 초빙 강사료가 계획대비 초과집행, 일부 교육과정은 집행이 전혀 없는 등 교육과정별로 예산집행 수준의 편차가 크고, 매년 초빙 강사료 예산의 30% 정도의 불용이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강사료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임 ○계획한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는 강사료 예산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고위직 대상 교육과정 예산 전액 불용 - 과장급 이상 교육과정 3개는 전액 불용,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또한 집행을 저조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사료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 2024년도 감사교육원 초빙 강사료 예산은 전년 초빙 강사료(2억 7,879만원) 대비 82% 수준인 2억 2,77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 앞으로 초빙 강사료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차량 등 임차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 개선 필요 [시정]	○[지적사항] 최근 3년간 매년 차량 등의 임차료(210-07목)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감액된 임차료 전액을 매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증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년도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22년도에는 전년보다 늘어난 1억 2,000만원을 조정하여 모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증액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반복적으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시정할 것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조명 위치변경 등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유지보수 추가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차료(210-07목) 집행 잔액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충당하였으나 - 앞으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2024년도에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료 예산을 전년 대비 153백만원(12.2%)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감사원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성과 목표 등 추가 개발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 예산 및 성과 계획은 단일 전략 및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목표를 <건정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로 하고 있음 ○감사원은 프로그램 목표 주요 내용의 ‘배경 및 의의’를 ‘감사원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비효율적 예산 운용, 고질적 비리,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저조’와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처리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공직사회 판단을 존중하는 등 소통의 필요성 대두’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에 대한 언급은 없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왔으며,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자체감사 관계관회의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등 [제도개선]	○[지적사항] 동 예산은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 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최근 3년 간 전체 사업비 중 자 체감사관계관 회의 항목은 2020 년도에는 23%, 2021년도 미집행, 2022년도 11%만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포상행사 및 권역별 설 명회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주된 항목보다 부가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의 종류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을 것	○ 2024년도 예산편성 시 ‘우수 자체감사활 동 포상 행사’ 및 ‘권역별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등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 ‘자체감사관계관 회의’와 직접 관련된 사 업만 해당 예산에 편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목적을 명확하게 개선 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받았음 <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table> <tr> <th>구분</th><th>2023년 예산</th><th>2024년 예산</th></tr> <tr> <td>자체감사관계관회의</td><td></td><td>20,000</td></tr> <tr> <td>자체감사활동 포상</td><td>90,000</td><td>30,000</td></tr> <tr> <td>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td><td></td><td>40,000</td></tr> <tr> <td>합계</td><td>90,000</td><td>90,000</td></tr> </table>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자체감사관계관회의		20,000	자체감사활동 포상	90,000	30,000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40,000	합계	90,000	90,000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자체감사관계관회의		20,000															
자체감사활동 포상	90,000	30,000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설명회		40,000															
합계	90,000	90,00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일반수용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실무부서와 자체감사기구 간 워크숍·설명회 개최, 감사활동 관련 협의 및 애로 사항 청취 등 소통 활동을 수행 하는데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210-01)를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실무협의 예산의 실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210-01) 중 일부를 실무협의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방식을 개선할 것	○ ‘자체감사기구 실무협의 등’ 예산을 감사 관련 협의, 교육활동, 감사문화개선 간담회 등 회의를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실무부서에 집행 유의 사항을 공지하였고 -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 실무협의 등’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 필요 [주의]	○[지적사항]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은 2018년신규 예산사업으로 1명의 직원을 5개월 간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국제 감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파견하는 사업이었음 ○동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한 이래 당초 계획과 달리 3개년(2018~2020년)동안 계속해서 3주 단기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교육과정이 5개월인 것과 3주인 것은 그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계획과 달리 3주 단기과정으로 집행한 점, 2022년도의 경우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초기부터 목적과 계획이 꿈꿈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추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선진감사기구 훈련프로그램 사업을 3개년 동안 실시한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 단계부터 재설계할 것	○ 감사원은 2023년 선진 감사기구 훈련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당초 선진 감사기구 훈련프로그램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간을 3개월*(9. 1.~11. 30.)로 확대하였고 * 당초 5개월 교육과정을 계획하였으나 훈련기관인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의 내부 사정으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함 - 2024년에는 캐나다 州 감사사무소에서의 견습과정을 포함하여 총 5개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기로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과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州 감사사무소 섭외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선진 감사기구 훈련 프로그램이 사업 내용,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9) 국외업무 여비의 일률적 상향조정 지양 필요 및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통역비 집행 부적절 [시정, 주의]	○[지적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숙박비와 식비에 한하여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로 조정하여야 함 -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숙박비와 식비를 최상급자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외업무여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220목)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통역비를 관련 지침과 다르게 국외업무여비(220-02)로 별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필요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로 조	○ 공무 국외출장 심사 시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음 - 또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부서에 관련 규정 등을 사전 통지하여 자체 점검하는 한편, 국외여비 정산 시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 국외여비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 항목에서 통역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부서에 집행 유의사항을 사전 통지하고, 공무 국외출장 심사 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할 것(시정) ○감사원은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통역비와 관련된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것(주의)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 편성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코로나 사태 예측이 가능했고, 2022년에는 입국 관련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점점 완화되는 상황*였음에도 코로나 19를 이유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온라인 및 초청연수 병행)과는 달리 연수방식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체 예산(추경) 중 73%인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6. 8), 입국 전 검사 중단(9. 4)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코로나 19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참고로 2023년도 ‘감사기구 역량 강화’ 예산(297백만원)의 경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의 99%인 29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일부 감액(5백만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1) ODA사업 예산 적정 집행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에 따르면 행사장 등의 임차시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호텔 등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교육원은 자체 강의실 및 회의장 등이 있음에도 호텔 회의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강의실로 사용하였음 - 또한 통역비는 소규모 업무 대 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210-01)로 집행하는 것이 타 당하나, 감사교육원은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일용임금 비목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추진 비를 사업대상자가 아닌 내부 직원에게만 사용된 점은 부적 절한 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행사 및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외부 장소 임차를 지양하고 통역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에 노력할 것	○ ODA 사업추진에 따른 외부시설 임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ODA 사업이 온라인 연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사교육원 자체 강의실 등 일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청 연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감사교육원의 다른 교육과정 일정 및 시설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교육원 내부에서 연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 통역비는 2023년부터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운영비는 용역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연수생 기념품 구입 용도에 한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 부적절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교육원 내부지침인 「강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거리 기관에 소속된 강사”의 경우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시간보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외에도 여비를 지급하거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그런데 감사교육원은 내부직원인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시간보상수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여비나 교통비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의료수당이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 위 수당의 지급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음 ○ 감사원 소속 직원의 경우 시간보상수당의 지급 취지,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도 원거리 소재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 - 본원 근무 직원이 감사교육원 강의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여 대면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며, ○ '23. 9월 「강의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시간보상수당을 포함한 강사료 등 총액이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간보상수당의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강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3)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 또는 강연 등의 대가로서 1시간당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그런데 감사교육원 내부지침인 「강의료 등 지급기준」은 현직 장관(급)의 기준 단가를 기본 1시간 50만원, 초과 시간당 2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강의료 등 지급기준」의 현직 장관(급) 기준단가를 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2023. 9. 13.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사례금 등의 총액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의료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감사교육원 시설 이용료의 적절한 부과·징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교육원 강의시설, 생활관 등 휴양시설에는 이용료 (2만원~20만원)가 책정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생활관을 제외 하면 시설이용료 수입이 전무하고, 생활관 시설이용료 수입도 2021년 부터 급감함 - 2018년 53,860천원, 2019년 59,880 천원, 2020년 5,010천원, 2021년 260천원, 2022년 240천원 ○2022년 감사원 소속 직원 등 1,981명이 생활관을 총 556건 이용 하였으나 내부규정을 근거로 직원 및 가족에게는 이용료를 징수 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용 금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운영이며 다른 공공기관 연수원 운영 사례와도 다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를 적절히 부과·징수하고,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 2023년 12월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전·현직 감사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활관 등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5)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및 심사 지연 시 행정소송 제기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비율이 국세 사건 87%, 산재 사건 75.9%, 기타 사전 53%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심사청구가 인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처리기간 미준수율이 100%에 달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조기에 한다는 등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심사청구 법정 결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와 같이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제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법정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인용률 제고 및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은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심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분야별 전담자 지정, 월별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였음 ▪ (심사인력 증원) 2024년 1월 심사관리관실 정원 2명 증원 ▪ (효율적 인력 운용)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조세 분야 심사를 전담 처리하는 등 분야별 전담자 지정·운용 ▪ (목표관리제 도입·운영) 개인별로 월별 최소 처리실적을 설정하고, 처리실적을 월별로 관리 ▪ (선람업무 강화) 국장 등이 매주 신규 배정 건을 선람하여 사건 방향(인용·기각·각하 등) 등을 사전에 검토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6) 국가 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의 감사원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역량 확충 필요 [시정]	○[지적사항]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확정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전기오류수정손익)가 최초 재무제표 개시한 2011년 이후 148.6조원(누적)에 달하고 2022년은 53.6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재무제표 검사를 매년 외부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감사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실지검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검사보조인으로 활용하고 있고, 2022년에도 2개 회계법인이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을 수행하였음 - 결산검사는 감사원 책임 하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감사원의 자체 검사역량을 확대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검사보조 용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022년 8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4년 1월 ‘공공재정회계감사국’(3개과)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자체 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자체 검사기관은 28개였으며, 2025년도까지 5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회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외에 회계학 석사학위 이상 경력자를 새롭게 응시자격 요건으로 확대하고, 채용공고를 연중 상시화하는 등 회계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 결산·회계검사 역량을 검증하는 내부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감사원 자체 회계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체 역량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 퇴직 증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7)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및 적극행정 면책자문 위원회 활성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2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운영실적을 보면, 현장면책 4건(2021년 14건), 사전컨설팅 인용 27건(2021년 40건), 패스트트랙 활용 2건(2021년 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신청면책의 2022년 운영실적을 보면, 8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가 1건은 적극행정으로 면책인정, 2건은 일부 인정으로 면책을 의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일부 인정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불인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2024년 4월까지 시정에 준하는 보고할 것	○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연 1회 추진하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2023년부터 3회 실시(4, 9, 12월 시행), ② 현장컨설팅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지감사 통지 시 현장컨설팅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2023년 5월) - 사전컨설팅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사안을 적극 발굴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접수 76건(인용 35건, 기각 1건, 의견제시 5건)으로 2022년 말 기준 접수 50건(인용 27건, 기각 3건, 의견제시 0건) 보다 152% 증가하였음 ※ '23년은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을 만한 긴급한 사안은 없었음 ○ 2023년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등 재난안전 분야 등에 대한 감사실시로 적극행정면책 관련 안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문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자문위원은 교체하는 등 자문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자문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아 논의하게 하고,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면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자문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는 증거와 법리 등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등이 다를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는 감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사원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의가 자문위원회의의 결정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8) 용역계약의 연말 체결에 따른 이월액 과다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지적사항] ‘차세대 OASYS 구 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3억원을 전용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연도말 계 약하면서 선금으로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연도말 계약으로 사 업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관리로 보임 ○OASYS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로 편성 목적과 다른 WGCMA(위기관리감사워킹그룹) 웹사이트 구축비 2,000만원을 집 행하였고, 일반연구비의 과소 편성 으로 용역 과업을 축소하여 2회 발주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ISP 수립 사업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용역 발주 당시 예산 잔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준칙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국회심의 내역과 다르게 ISP 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용역계약을 조기에 체 결함으로써 과도하게 예산을 이 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앞으로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 심의 내역과 다르게 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을 과도하게 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그리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 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양하 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 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감사원은 예산을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그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유찰 및 전용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9)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지연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지적사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수요조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연도말 계약으로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내·외부 관련자 인터뷰 등은 선행사업인 2020년 ISP 수립사업에서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SP 사업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수행 시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정보화사업 수행 시 내·외부 관련자 인터뷰 등 ISP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참고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ISP 사업에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공처리 하였음

4. 2021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결산검사시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한 국가재무제표에서 차후 년도에 지속적으로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총 95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 손익의 발생은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바, 감사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결산 검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회계교육 강화 등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감사원은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2년 8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자체 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임 < 단계별 자체 검사대상기관 확대 방안 > <table><tr><th>구분(회계연도)</th><th>기관 수(누적 기관 수)</th></tr><tr><td>1단계('22년도)</td><td>6개(28개)</td></tr><tr><td>2단계('23년도)</td><td>8개(36개)</td></tr><tr><td>3단계('24년도)</td><td>10개(46개)</td></tr><tr><td>4단계('25년도)</td><td>5개(51개)</td></tr><tr><td>5단계('26년도)</td><td>9개(60개)</td></tr></table> ※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6개 기관을 추가로 자체 검사 실시 중 ○ 또한,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 계사 외 회계학 석사학위 이상 경력자를 새롭게 응시자격으로 확대하였고 - 직원들의 회계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검사 및 회계교육과정'을 연 2회로 확대('22년 1회) 운영하고, 전문인력제도 개편 시 회계 전문분야를 신설하고 특화된 보직 경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구분(회계연도)	기관 수(누적 기관 수)	1단계('22년도)	6개(28개)	2단계('23년도)	8개(36개)	3단계('24년도)	10개(46개)	4단계('25년도)	5개(51개)	5단계('26년도)	9개(60개)
	구분(회계연도)	기관 수(누적 기관 수)												
1단계('22년도)	6개(28개)													
2단계('23년도)	8개(36개)													
3단계('24년도)	10개(46개)													
4단계('25년도)	5개(51개)													
5단계('26년도)	9개(60개)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필요 등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은 2017년부터 결산 검사·확인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현금 사용시 원칙적으로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기관들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2021년 결산 검사·확인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	○ 감사원은 '22년 8월 '21년 결산 검사·확인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한편,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예산 등 비밀사항(Ⅱ급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22회계연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완료 후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 [지적사항] 사전컨설팅 제도의 총 접수건수 및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 실적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함 - 사전컨설팅 인용/접수 건수: 2019년 39건/101건, 2020년 46건/84건, 2021년 38건/74건, 2022년 현재 12건/28건 - 패스트트랙 활용실적: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1건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가 차별화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22년 4월 기존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에 한정된 신청기관을 확대하여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컨설팅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 위 개정 사항 홍보 및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22년 9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사전컨설팅 예산은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등 필요 [주의]	○ [지적사항] 감사원이 모범 공직자에 대한 포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연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선발된 모범 공직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2021년도 모범 공직자 해외연찬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 8,700만원 중 집행된 내역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로 모범공직자는 표창 외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모범 공직자로 선정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설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포상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모범공직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22년 7월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 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 모범사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연찬 외에 포상금을 신설하는 등 포상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였음 ○ 한편, '22년 11월 '20년 이후 모범공직자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포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개인포상자 17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찬을 실시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은 일용임금 비목을 집행하면서 비목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집행하였고, 유사사업 보조인력 보수 대비 높은 보수를 책정하여 집행하였음 - 동일인에게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모두 일반수용비 방식으로 집행단가를 산정하였으나 통역비는 일용임금으로, 번역비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함 -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온라인 연수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유사 세부사업인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한 보조인력과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난이도가 유사함에도 보수는 약 2배 정도 높게 책정하여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비목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23년 예산은 통역비와 번역비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비목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음 ○ 또한, '23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은 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은 편성하지 않았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연구용역사업 예산 비목 조정 필요 등 [제도개선]	○ [지적사항] 15건의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중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 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구성·운영이나 감사활동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일반연구비보다는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 -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는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 용역 등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정책연구비는 과학기술·생산 기술 및 정책개발 관련 연구 등에 대한 반대급부임 ○ 시급성이나 계약 절차 지연(유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말(10월 말 이후) 용역계약 체결로 일반연구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 * 2019년 7,900만원, 2020년 1억 4,700백만원, 2021년 1억 1,800만원 ** 2019년 400만원, 2020년 6,500만원, 2021년 1억 8,500만원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일반 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를	○ '23년 예산의 경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 용역은 정책연구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반연구비(감사활동경비) 중 일부를 정책 연구비(감사연구활동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요구할 예정임 ○ 또한, 연도말 용역계약 체결 관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초 연구용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간 추진할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하는 등 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정확히 분류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감사원은 연도말 용역계약 체결 관행의 반복과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 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관련 여비 집행실적 개선 필요 [주의,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법」상 재심의 처리기한(2개월)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2021년 재심의 처리 건 중 법정기한을 준수한 비율은 8.7%에 불과한 반면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52.2%에 달함 ○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2021년부터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를 별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2021년 집행률 3.13%, 2022년 상반기 집행률 0.41%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심의 처리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주의) ○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제도개선)	○ 감사원은 '18년 2월 재심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그간 관계인 권익보호를 위해 청구권 확대·강화에 보다 치중한 결과 업무량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22년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그간 누적되었던 재심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52% 감액한 14백만여원으로 편성하였고 - 앞으로 관계인 면담과 추가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 직원 등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감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감사인 특별소양교육과 과 단위 워크숍 관련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직원(1,1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고, 워크숍 실시 단위별 자유토론 및 팀워크 강화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였음 * 특별소양교육 : 68,000원, 과단위 워크숍 : 50,000원 ○ 동 예산은 워크숍 실시 단위별로 체육활동비, 식·음료비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국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또는 개인카드를 현장 집행한 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이와 같은 워크숍 관련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비목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정산 방식도 일반적인 정부구매카드 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특별소양교육 및 과단위 워크숍 관련 경비의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	○ '22년 10월 감사인 특별소양교육 및 과 단위 워크숍 등 직원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수용비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집행 방식을 개선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9) 지방관사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연도말 지방관사 이용률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관사 임차료의 불용액**이 발생함 * 2019년 : 74.1%, 2020년 : 77.4%, 2021년 : 60.4% ** 2019년 2,900만원, 2020년 5,000만원(감조정 채원 활용), 2021년 7,100만원 - 이는 선임차 후 입주 희망 여부에 따른 관사 운영방식 등으로 사전적 수요파악 및 정확한 임차료 소요액 산출의 한계에서 기인함 ○ 무형자산(440-00목) 예산 편성 없이 기존 관사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신규 임차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 금액만큼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집행 지침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그 예외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됨	○ '22년 8월 정기 전보인사 시 지방사무소 발령자에 대하여 지방관사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 희망자에 한해 신규 관사를 임차하는 등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관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전보인사에도 사전에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정확한 임차료 소요액을 산출하겠음 ○ 한편, '22년 기존 관사 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은 전액 세입처리('22. 12. 6.)하였고, '24년부터 신규 지방관사 임차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 비목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예산집행지침상 반환 임차보증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재무제표상 자산(전세권) 감소로 계상되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지방관사 이용자 선호를 반영한 지방관사 임차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것 ○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관사 반환 임차보증금을 세입처리하고 신규 계약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 비목을 신설하여 세출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 업무포털 시스템 관련 성과지표 실적 부진 [시정]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OASYS* 구축·운영 사업은 2021년도 성과지표로 ‘OASYS 활용 검색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OASYS: 감사원 내부의 업무포털 시스템 - 2020년 달성도는 86%, 2021년 달성도는 78.6%로 점차 실적이 저조 ○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OASYS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업무지식과 업무자료를 적극적으로 동 시스템에 구축하는 등 업무지원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현재 수행 중인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22년 12월~’23년 4월)을 통해 OASYS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정보검색 결과를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 이·전용 등 최소화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기본경비 내 관리용역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타 비목에서 이·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년 조정 6,900만원, 2019년 전용 8,000만원, 2018년 전용 8,800만원 ○연례적인 예산의 조정 및 이·전용은 다른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연례적인 예산의 조정 및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감사교육원은 '20. 12. 31. “감사교육원 청사관리용역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1. 1. 1.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맞춰 공무원 전환을 완료함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 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청구 평균 처리기간과 법정기간 초과 비율이 증가 -평균처리기간 : 국민감사청구 '18년 44.7일→'20년 71.0일, 공익감사청구 '18년 60.3일→'20년 63.8일 -법정 처리기간 초과 비율 : 국민감사청구 '18년 60.9%→'20년 72.7%, 공익감사청구 '18년 55.6%→'20년 69.4% ○전체 감사청구('17~'21.6.)에 대한 감사착수율은 낮은 상황임 -국민감사청구 : 9.8%, 공익감사청구 : 18.2% ○감사실시 결정기간의 장기화와 낮은 감사착수율은 훼손된 공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제도의 실효성 측면 등에서 감사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착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것	○제한된 인력, 청구사항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 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 감사청구 건마다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 등 감사실시에 준할 만큼의 검토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외형상 청구 대비 감사 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의 감사착수율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청구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 적극적 감사실시 원칙 수립 하에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청구 제도 전반을 개선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3) 심사청구 제도 운영시 법정 결정 기한 준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0년 평균 심사청구 기한은 188일,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평균 처리기한은 349일로, 이는 법정기한(3개월)을 지나 처리됨 -특히,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이 조세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심사청구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심사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	○우리 원은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미결 집중처리, 유형별 일괄처리, 담당자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장기미결 집중처리) 접수 이후 1년 경과 미결사항 집중처리 ▪ (목표관리제) 담당자별로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 관리 ▪ (유형별 일괄처리) 조세 세목별(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합·병행처리 ○이에 따라, '21년 조세불복 심사청구 평균 처리기간(298일)은 '20년(349일) 대비 51일 단축되었음 -앞으로 법정기한 내 심사청구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강화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신규로 도입·운영 중이나 각 제도 도입후 유의미한 수치상의 개선은 미흡함 -현장면책(2018년 도입) : 2018년 16건, 2019년 10건, 2020년 19건 -사전컨설팅(2019년 도입) : 2019년 82건, 2020년 78건 -패스트트랙(2020년 도입) : 2021년 5월까지 총 12건 ○감사원 홍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외광고 형식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는 일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교육과정도 적극행정 관련 과정이 미흡한 측면(21개 과정 중 1개)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홍보 강화 및 사이버교육과정 확충 검토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며,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	○ '21년 구축한 적극행정지원 전용 웹사이트에 우수 사례 등을 업데이트 하고, 관련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겠으며 -감사교육원과 협업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확충하는 등 적극행정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단계별 기준기간 준수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21년도부터 적극행정지원 관련 사업비를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분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5) 기관장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는 지급 및 지출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장이 정기적으로 매월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감사원(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 : 2016년 37억 7,400만원, 2017년 34억 6,800만원, 2018년 30억 9,600만원, 2019년 23억 2,200만원, 2020년 18억 7,500만원, 2021년 17억 7,660만원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기관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사항을 점검하고,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는 지급과 지출 방안 모색을 검토할 것	○감사원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집행지침 등을 마련하고 지출증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음 -특히 '21년도 예산심사 과정('20년 11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수활동비 지급대상을 감사정보제출의무*가 있는 국장급 이하 직원으로 정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1급(고감단가급) 이상 간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보제출의무를 종전 무보직4급 이하 직원에서 국·과장까지 확대 -지급방식도 정보제출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6) 비대면 감사 지원 활성화 [제도개선]	○[지적사항] 전자자료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감사 지원 활성화가 필요함. 외교부 행정회계시스템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비대면 감사 지원을 활성화하고 외교부 행정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회계시스템의 경우 노후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현재 재구축 사업('21. 8월 - '23. 8월)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외교부와 정보연계 대상·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재구축 사업 일정에 맞춰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감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7) 공사지연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가 지연되었고, 기존 건물 해체설계 적정성검토 기간 소요 등으로 해체공사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지연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 12. 28. 건축 공사 외 3개 공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2. 1. 17.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 ○향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8)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교육원은 과거 교육실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 달성도를 지나치게 높게 측정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함 <최근 4년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 지표</th> <th>구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td> <td>목표</td> <td>30,600</td> <td>28,143</td> <td>30,359</td> <td>33,500</td> </tr> <tr> <td>실적</td> <td>28,664</td> <td>35,157</td> <td>38,355</td> <td>-</td> </tr> <tr> <td>달성도</td> <td>94%</td> <td>125%</td> <td>126%</td> <td>-</td> </tr> </tbody> </table>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과거 교육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도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	성과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30,600	28,143	30,359	33,500	실적	28,664	35,157	38,355	-	달성도	94%	125%	126%	-	○'22년부터 성과관리의 단위가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이수자 수'가 성과목표에서 제외됨 -참고로 '22년 교육계획에서 교육계획 총인원을 최근 3년 평균 교육인원 38,352명 대비 104.2%(39,970명)로 설정하였음 *'22년도 교육계획 상 교육계획 총인원 39,970명은 '21년도 계획인원 33,500명 대비 4,470명(19.3%) 증가한 것임
성과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이수자 수 (단위: 명)	목표	30,600	28,143	30,359	33,500																			
	실적	28,664	35,157	38,355	-																			
	달성도	94%	125%	126%	-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9) 교관연찬 과정 개선 필요 [시정]	○[지적사항] 교관연찬 과정은 그간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교육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매년 편성해왔으며, 2020년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였음 ○감사교육원은 교관연찬 대상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교육원 직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도 포함하여, 당초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교관연찬 과정은 감사교육원 내 교수요원의 강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감사교육원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을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과거 교육실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고, 교관연찬의 대상을 교수요원 및 출강 가능성이 있는 강사진으로 한정하며, 교관연찬 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관연찬 사업을 개선할 것	○교관연찬 과정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 교육대상을 강의 경험이 있거나 강의 예정자로 한정하여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예정 ○또한, 위 과정에 대해 '23년도 예산요구 시 기본경비로 편성을 추진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0)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의]	○[지적사항] 2020년에 감사교육원이 집행한 교재제작비의 41.6%가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임 -감사교육원은 2019년 12월에 이루어진 감사분야별 과정, 감사실무자에 대한 교재제작비를 2020년에 집행하는 한편, 2018~2019년에 운영된 국제교육 과정과 관련된 강의자료를 모아 2020년에 책자로 발간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감사교육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지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였음 ○또한, 감사교육 교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국가회계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1)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의]	○[지적사항] 2020년도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12월 29일에 개최하여 그 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2020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2021년도 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출한바,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앞으로 자문위원회 개최 시점을 12월 중순경으로 앞당겨 실시하여 연도내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2) 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 회계연도 일치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연구과제 수행의 사업 기간과 연구보고서 발간비 집행의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당초의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 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함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연구 보고서 작성과 발간·집행 연도를 일치시키고 연중 고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사업관리를 철저 히 할 것	○앞으로 당해연도에 완료된 보고서는 당해연도 발간을 원칙으로 하여 발간· 집행 연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3) 감사연구원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사업 개선 필요 [주의]	○[지적사항]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 문화 개선사업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이어져 왔으며, 사업 목적과 달리 외국어 교육 수강료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연구원은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직원 교육훈련 및 조직문화 개선사업 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 대면 및 비대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액 과다 해소 필요 [주의] [제도개선]	○[지적사항] 퇴직일시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중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 중임 -이에 따라 2020년 1억 4,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 6월 현재 집행액도 3,900만원에 불과하여 불용액 규모 확대가 예상됨 ○반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적 설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법정부담금 전액 적립을 위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초래가 예상됨 -2020년 가입 전제시 8억 7,300만원, 2021년 가입 전제시 10억 1,400만원 추가 소요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현원차 및 상용임금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0년도의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상용임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예산</th> <th rowspan="2">예산 현액</th> <th rowspan="2">집행 액</th> <th rowspan="2">불용 액</th> </tr> <tr> <th>예산액 (추경)</th> <th>무기계약직 인원</th> </tr> </thead> <tbody> <tr> <td>2017</td> <td>991</td> <td>32</td> <td>991</td> <td>981</td> <td>10</td> </tr> <tr> <td>2018</td> <td>1,987</td> <td>65</td> <td>1,987</td> <td>1,970</td> <td>17</td> </tr> <tr> <td>2019</td> <td>2,268</td> <td>68</td> <td>2,260</td> <td>2,230</td> <td>30</td> </tr> <tr> <td>2020</td> <td>2,393</td> <td>73</td> <td>2,393</td> <td>2,229</td> <td>164</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집행 액	불용 액	예산액 (추경)	무기계약직 인원	2017	991	32	991	981	10	2018	1,987	65	1,987	1,970	17	2019	2,268	68	2,260	2,230	30	2020	2,393	73	2,393	2,229	164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예산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년도 예산 편성 시 퇴직연금 가입 예산을 삭감하고, 퇴직일시금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근로자 퇴직 시 신규채용을 지체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도 진행 또는 완료하여 '22년 상용임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함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집행 액				불용 액																										
	예산액 (추경)	무기계약직 인원																																
2017	991	32	991	981	10																													
2018	1,987	65	1,987	1,970	17																													
2019	2,268	68	2,260	2,230	30																													
2020	2,393	73	2,393	2,229	16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퇴직금 예산편성과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고용부담금 불용액 과다 문제를 해소할 것(주의) ○감사원은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현원차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것(제도개선)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5) 재심의 처리 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등 [제도개선]	○[지적사항] 2020년 재심의 처리기간(2개월) 준수율이 10.4%에 그치고, 평균 처리기간도 200일을 경과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부적절 - 「감사원법」상 연장사유 통지 및 연장 시 처리기간 규정 부재 * 「국회법」은 감사원 감사요구에 대해 중간보고, 감사기간 연장 시 처리기간(2개월) 별도 명시 ○2020년 재심의 인용률(18.8%)이 전년(6.3%) 및 5년 평균 재심의 인용률(10.3%)보다 증가하여 감사결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저하로 보일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연장사유 통지 및 연장 시 적정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감사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결과의 완성도·신뢰성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관리적 문제를 점검할 것	○'22년 7월 신규 접수분부터 접수 후 법정기한(2개월) 도과 시 처리기간 연장 및 연장사유를 고지하는 '중간통지제도' 도입(「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반영 예정)을 검토하고 -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결정문 체계 개편 등 재심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앞으로도 감사결과가 더욱 높은 신뢰성 등을 가질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6)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조정 [주의]	○[지적사항] 이 사업의 낙찰차액 일부를 낙찰차액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2020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규정 위반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계약건명</th><th>발주 금액</th><th>계약 금액</th><th>낙찰 차액</th><th>낙찰차액 사용용도</th></tr><tr><td>일체형 컴퓨터(IPC형) 구매</td><td>234</td><td>211</td><td>23</td><td>노후 전산장비 교체(18.9)</td></tr></table> 자료: 감사원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처리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향후 낙 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한정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주의할 것	계약건명	발주 금액	계약 금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일체형 컴퓨터(IPC형) 구매	234	211	23	노후 전산장비 교체(18.9)	○ '21년도 정보화 사업(자산취득비)의 낙 찰차액 전액 불용처리 ○ 향후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한 정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음
계약건명	발주 금액	계약 금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용도								
일체형 컴퓨터(IPC형) 구매	234	211	23	노후 전산장비 교체(18.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7) 차질없는 공사사업 추진 필요 [주의]	○[지적사항]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사무실 임차료가 발생함 -당초 2020년 3월~12월(10개월)간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2021년 6월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기간도 1년을 연장함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임차 공간의 연간 임대료는 7억 2,072만원, 고정관리비는 월 4,674만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연간 12억 8,155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함 ※연간 임차료 등 산정내역(실비성 경비 별도) -1,281,548,400 = 임차료(720,720,000) +고정관리비(46,735,700×12=560,828,400)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것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 12. 28. 건축 공사 외 3개 공종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2. 1. 17.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 ○향후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정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8)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기록 이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적 오류 가능성을 지속시켜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조원 ○감사원에서 결산보고 시 구체적인 종합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을 제시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에 대한 부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의 발생을 줄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여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보고 시 종합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년도('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부처별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원인을 분석 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 등에 결산검사 결과를 시행시 주의요구 등 처분요구를 실시하거나 개선방안을 통보할 계획임 ○검사의견(종합감사의견) 표명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